

워킹페이퍼 2005-04

독일 사회보장제도

김 안 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

목 차

들어가는 말

I.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태동	7
제1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효시	7
제2절 이후 독일 사회보장제도	8
제3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색	9
II. 독일의 5대 사회보험제도	11
제1절 의료보험제도	11
제2절 상해보험제도	14
제3절 연금보험제도	17
제4절 고용보험제도	20
제5절 간병보험제도	23
III. 독일의 사회부조	26
제1절 사회부조(Sozialhilfe)제도	26
제2절 취약인구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32
제3절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38
부 록(사회법령집(Sozialgesetzbuch))	45
참고문헌	122

표 목 차

<표 1>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가구 구성원별 월 생계급여액 (2005년)	27
<표 2> 생계급여의 구성 내용	28
<표 3> 독일의 사회부조 비용	32
<표 4> 장애연금 최저 수급요건(2001년)	34
<표 5> 노령연금 최저 수급요건(2001년)	35
<표 6> 아동급여(Kindergeld) 수급자 및 급여지출 현황	37
<표 7> 주거급여 수급자 분포현황(2003)	40
<표 8> 지역유형별 가구규모에 따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료 및 유지비(2005) 상한선	41
<표 9> 실업급여 II의 지급현황(2005)	43

그림 목 차

[그림 1] 사회부조 지출액 추이	31
--------------------------	----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간략한 개괄과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사회법령 제12집(SGB XII)의 사회부조법(Sozialhilfe)에 대한 개요를 정리한 글이다. 『아젠다 2010』이라 불리는 하르츠(Hartz) 개혁안은 독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혁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전후 가장 강력한 개혁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개혁안은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경제, 재정, 교육과 기업혁신 등 독일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실업자수 5백만명 시대를 맞아 해고 방지법의 개혁, 실업수당 관리의 합리화, 실업보조금과 사회보조금의 통합운영, 노동청의 개혁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있는 장기실업자 부조의 경우 기존의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와 사회부조(Sozialhilfe)를 통합하여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로 통칭하고 그 지급수준은 종전의 사회부조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약 2.8백만 사회부조 수급자 중 8십만에서 9십만명의 근로능력자들은 차후 사회부조 대신 새로운 실업급여 II를 지급받게 된다.

『아젠다 2010』의 목표인 경제적 동력의 강화, 일자리 창출, 임금부대비용의 절감 및 장기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체계의 근대화를 위해 독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사회부조(Sozialhilfe) 역시 새로운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보고서는 독일 사회보장제도 태동의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사회보험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개편된 독일의 사회법령 제12집 사회부조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태동 배경 및 특징

제1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효시와 배경

1. 산업화과정에서 급속히 성장한 노동자계층의 불만과 요구에 따른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정책이 독일 사회복지 제도의 효시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등장과 산업화로 인해 증가한 노동자의 조직적 투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복지 정책 도입

- 188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분배 불공정 문제, 도시화로 따른 주택난과 고물가가 초래되면서 근로자들의 조직화에 따른 노동운동이 격화되고,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본격화 됨.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체제상의 위협을 느낀 鐵血宰相 비스마르크(Bismark)는 “채찍과 사탕”의 정책, 즉,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쓰게 됨.

• 사회주의 규제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규제

• 노동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약속하면서 국가가 보호자로 자처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 유도

○ 그 결과 1880년대 세계최초로 본격적인 사회보험입법 추진

- 의료보험법(1883년), 산업재해보험법(1884년), 연금보험법(1889년) 제정하여 3개의 법률은 육체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1911년 제국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으로 통합

- 사무직 근로자를 위해서는 1911년 직원보험법(Angestelltenversicherung) 별도 제정하여 이 두 법은 현재 독일 사회보장의 기본 법규가 됨.

제2절 이후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개

1. 바이마르(Weimar)공화국의 수립과 독일 사회보장체계의 완성

-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으나, 바이마르(Weimar) 공화국의 사회보장법규의 정비, 재정 및 적용대상의 확충, 급여수준의 개선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 독일 사회보장의 체계가 완성
 - 또한 현행 사회부조의 전신인 공적보호법을 제정, 각종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단순화시키고 통일시킴.
 - ※ 1929년 각종 급여혜택자 약 280만명에 달함.
 - 바이마르 시대의 최대업적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1927년)이나, 1929년 이후 세계경제를 휩쓴 대공황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아 사실상 무효화 됨.
 - 세계 제2차 대전 시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전후 사회보장의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재정기반을 새로이 마련해야 했음.

2. 戰後 독일의 사회보장

- 1949년 집권한 아데나워(Adenauer) 수상은 기독교민주당(CDU)은 전후의 경제부흥에 주력하여 “활용한 경제정책이 최선의 사회보장정책”이라는 모토 하에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보장을 가미하는 정책 추진
 - 사회보험의 운영에서는 나치 이래 폐지되었던 “자주관리원칙”을 1951년에 부활
- 전후 경제부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66년 사회민주당(SPD) 연립정권의 집권 이후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을 추진
 -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혼합한 “신 사회주의”를 내세워 사회보장의 확대 추진
 - ※ 의료보험: 농민의료보험의 실시(1972), 적용대상에 학생 포함(1975)등을 통해 1883

년 의료보험 실시 이후 거의 90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 달성. 연금제도: 1972년 연금개혁을 단행하여 적용대상에 자유업 종사자와 주부를 포함시키고 최저연금보장제도를 도입

- 197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침체로 1983년 집권한 기민당(CDU) 연립정권은 다시 보수적 입장의 사회보장정책으로 환원
 - 사회보장 급여수준의 확대를 억제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정정책 또는 현상유지 정책으로 나아감.
- 1990년 동서독의 통일 후 서독에서 실시하던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동독지역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동서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서독 지역에 통일비용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

제3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사회보험의 자주관리의 원칙

- 사회보험의 운영을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또는 집단 구성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2. 집단적 자조의 원칙

- 기업단위별·지역단위별 또는 직종단위별로 집단 내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자를 스스로 구조한다는 집단구성원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보험제도 운영
- 집단별로 분리된 형태의 수많은 보험조직이 구성되고 재정운영도 독립적
 - ※ 대표적 예로 의료보험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1,200여개에 달하는 의료보험금고를 구성하여 각기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금고별로 보험료율, 보험급여조건, 재정상황 등이 차등

3. 비교적 강하게 작용하는 능력주의 원칙

- 완전한 소득비례제를 채택한 연금제도의 경우 과거 재직 기간 중의 소득수준과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능력주의 원칙을 강조

4. 결론적으로 독일의 복지국가는 평등과 연대의 촉진을 목적으로 국민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에 그치지 않고 생활전반의 평등과 최적화를 지향

- 사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원리를 조화시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나 공적부조 중심보다는 사회보험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특징

II. 독일의 5대 사회보험제도

제1절 의료보험제도

1.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개요 및 특징

-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목표: 피보험자의 자기책임과 의료보험제도의 연대공동체적인 성격 강조
- 의료보험의 특징
 - 의료보험제의 가입의 의무화, 보험료납부의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의 제한된 소득 재분배장치, 조합분권적인 조직형태 및 조합자치행정
 - 의료급여는 재화 및 용역으로 제공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기관 선택 가능
- 경제성의 원칙
 - 급여는 충분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경제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 의료보험조합, 요양기관 및 피보험자는 급여가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에서만 행해지도록 함.
- 의료보험급여 후순위원칙
 - 피보험자는 다른 사회보험운영주체(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간호보험)가 급여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보험조합에 이를 청구할 권리를 지님.

2. 의료보험제도의 내용

- 적용대상: 근로자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급여가 일정 상한(보험료 산정상한성)을 넘는 근로자나 저소득계층(주당 15시간 이내의 일을 하거나, 월소득이 의무피보험자 월보수액의 1/7을 넘지 않는 자)은 가입의무에서 면제
- 의료보험의 급여
 - 급여의 내용은 용역, 재화, 급전급여로 구분
 - 용역급여: 질병의 조기검진, 진료, 조산원의 의료활동 등 사람이 직접 의료활동으로서 행하는 급여
 - 재화급여: 의료에 필요한 물건으로서 급여를 말하며, 약, 교정치료기구, 보장구 등 금전을 제외한 모든 것 포함
 - 급전급여: 상병수당, 분만비와 같이 직접 급전으로 지급되는 급여

3. 의료보험의 운영방식 및 재정

- 의료보험의 주된 재원은 의료보험료이며, 세금에서 지출되는 국가의 보조금은 의료보험재정에 보조적인 역할 수행
 - 의료보험료의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나, 군복무나 민간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자를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고, 연금수급자를 위해서는 연금보험공사가 의료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 의료보험료의 산정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능력만이 고려
 - 의료보험가입자의 소득이 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며, 의료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부과대상소득의 상한액을 정함.
 - 보험료의 산정: 임금 등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저소득자(월 400유로)는 의료보험가입이 면제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 2004년 현재 월 임금총액이 3,862유로에 달하지 않는 사람은 의료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상회하는 고소득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민영의료 보험에 가입 가능

○ 의료보험조합의 재정

- 재정은 자율적, 독립적이었으나, 1994년 이후 흑자인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조금을 각출하고, 적자인 의료보험조합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를 시행

4.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변화

○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의료보험재정의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야당 모두가 승인한 보건개혁패키지를 2004년 1월 1일자로 시행

- 의료보험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개혁은 2006년까지 연간 230억 유로를 비용절감시킬 것으로 기대
- 의약품, 진료비 및 입원비에 대한 환자부담을 늘려 의료보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350여개의 의료보험기금을 통합
- 종합병원의 진료비용 축소를 위해 모든 질병을 질병군으로 분류하여 각 질병군에 상응하는 수가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2004년부터 실시
- 진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전자식 의료보험증을 도입하고 진료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일반 의약품에 대한 자유가격제도를 시행하고 복잡한 본인부담제도를 단순화

○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收入구조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제2절 상해보험제도

1. 상해보험의 개요 및 특징

- 직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
 - 예방적 과업: 직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환(직업병)에 의한 건강의 손실과 손상을 예방
 - 재활 과업: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질환, 손상된 건강, 장애 및 감소된 직업수행 능력을 회복, 재활
- 상해보험의 기능
 - 손해배상의 기능: 발생한 상해, 질환 및 이로 인한 장애를 현금급여로 배상
 - 기업평화의 기능: 사용자와 상해피해자 간의 법적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상해의 발생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기업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업 내의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짐
- 사용자가 상해보험료의 전액을 부담
 - 보험사고로부터 발생한 손상에 대한 치료, 간호, 직업능력을 복구하기 위한 재활처치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상해보험전달기관으로 일원화
- 상해보험조합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
 - 산업, 직종 및 지역에 따라 상해보험조합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 노사 대표 위원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

2. 상해보험의 내용

- 적용대상: 고용주와 공식적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피고용자 및 기타 상해로부터의 보호될 필요(상해보험육구)가 있다고 간주되는 당연(의무)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및 보험가입의무 해제자
- 상해급여의 형태: 피해자의 손상된 건강과 기능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상해 이전의 삶을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활급여, 응급의료 지원과 진료 및 치료를 포괄하는 치료급여 및 직업재활급여, 사회복지 급여 및 보충급여, 간호급여
- 지급되는 내용
 - 상해보상금: 상해보험급여에 대해 보충적 기능을 가지는 현금급여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공백분을 보상
 - 전환금: 상해보험가입 피해자가 치료활동을 종료하고 직업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금액으로 상해직전 취득한 노동보조금과 노동소득 총액의 80%를 지급
- 상해연금
 - 피해자의 근로활동 능력이 보험사고 후 26번째 주가 경과한 시점에 보험사고 전에 소유한 능력의 20% 이상이 감소되었을 경우 연금신청권을 가짐.
 - 근로활동 능력이 100% 상실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액은 100% 근로활동능력을 가지고 업무 수행시 지급받았던 총 소득액의 2/3수준
 - 유족 보상급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장제비 및 운구비, 유족연금, 유족 지원금에 대한 신청권을 가짐.

3. 상해보험의 운영 및 재정

- 산업별, 직종별 및 지역별로 여러 운영주체들에 의해 구축, 운영되며 상해보험 운영의 주체들은,
 - 산업(공업) 부문별로 구축된 산업동업자 조합
 - 정원업 종사자의 동업자 조합을 포함한 농업경영동업자 조합
 - 연방, 주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공공부문 종사자 조합으로 나뉨.

- 이들 상위 운영주체들에 의한 상해보험조합은 내부에 또다시 세부업종별, 지역별로 하위의 단위 상해보험조합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위조직을 중심으로 연맹을 형성하고 있음.

- 각 단위 상해보험조합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출하나 노, 사의 대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자치운영 기구로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가 있음.
 - 자치운영 기구는 운영위원회를 구축하여 영역별로 예산, 회계, 재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보험업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됨.
 - 각 단위 상해보험조합의 정관, 법규정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대의원 총회는 상해보험의 입법부적 기능 가짐.
 - 각 단위 상해보험조합의 예산안을 수립하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이사회는 상해보험의 행정부적인 기능을 가짐.

- 상해보험의 재정 조달과 보험료
 - 재정조달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유지되는 순부과방식(純賦課方式)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재원조달을 위해 보충적 부과방식을 부분적으로 병행

4. 최근 상해보험제도의 변화

- 보험의 적용범위를 산업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비산업분야로까지 확대하면서 상해보험으로서 성격을 갖춤.
 - 산업현장에서 사고발생률이 감소되고, 산재에 의한 노사간의 갈등이 약화되었으며, 피재자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 최근 보험료 및 보험운영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 단위조합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해보험을 민영 보험회사로 이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재의 운영방식을 지지

제3절 연금보험제도

1. 독일 연금보험제도의 개요 및 특징

- 노동자보험으로 시작된 연금보험은 현재 소득이 있는 국민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의 성격 지님.
- 연금보험의 특징
 -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
 - 사회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주어지는 연대의 원칙이 적용
 - 군복무 혹은 자녀양육기간 등 대체기간을 두어 정책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금급여를 지급

2. 연금보험의 내용

○ 연금보험 의무가입대상자

- 임금을 받고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형태 및 직종의 근로자 및 일정한 소득 활동 및 소득대체활동을 하는 자

○ 연금보험 급여의 내용

- 노령연금: 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자가 65세에 도달한 경 피보험자 당시 순소득의 약 70% 수준을 연금으로 지급
- 유족급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45세 이상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피보험자 노령 수급액의 60%가 지급되고 그 외의 경우 25% 지급
- 장애 및 재활급여: 연금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하고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에 대한 재해 발생시 급여 지급
- 기타 급여: 연금보험 피보험자들에게 의료보험료와 간호보험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피보험자와 이혼하고 독신인 배우자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3. 연금보험의 운영방식 및 재정방식

○ 생산직과 사무직간의 별도의 연금보험 관리운영체계

- 생산직 근로자: 주마다 설치된 18개의 보험공단
- 사무직 근로자: 1개의 연방사무직 근로자 보험공단 등

○ 부과방식의 연금보험 재정방식

- 1957년 연금개혁을 통하여 적립방식에서 10년을 단위로 하는 일정기간 부과방식으로

연금보험재정의 기본방식을 변경

- 현재의 1년 단위의 부과방식은 1969년 도입

○ 연금보험의 주된 재정적 기반은 연금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로 구성

-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 부과방식의 특성상 보험료율은 당해연도의 연금보험급여를 충당하고, 급여지급을 위한 준비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1일에 범규명령의 형식으로 변경 고시
- ※ 근로자 연금보험료율 변화: 19.3%(2000)→19.1%(2002)→19.5%(2004)

○ 연방보조금

-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병역복무자에 대한 보험료 등은 연방이 지불

4. 최근 연금제도의 변화

○ 독일의 국민연금은 최근 큰 폭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여 2030~2050년 노동세대는 연간수입액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지급할 전망

○ 이러한 연금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법안을 2005년부터 시행

- 만기연금 수령개시 연령을 2011년부터 2025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연금수령 개시 최저연령도 60세에서 63세로 조정
-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연금수령자와 연금보험료 납부자수간 비율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持續性指數(sustainability factor)제도를 도입

※ 인구고령화 및 노인부양비율(dependency ratio)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연금지급액이 축소

제4절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의 개요 및 특징

○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뿐만 아니라 취업장려정책(Arbeitsfoerderung)까지를 포괄하는 개념

- 고용보험이란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관련된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

2.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 농업근로자 및 직업훈련생을 포함한 소득을 갖는 모든 근로자 즉, 육체 및 사무직 종사자 등으로 의무가입의 원칙

○ 실업급여 지급방식

- 수급자격: 실직 전 1년간 고용보험가입의 의무가 있는 고용관계로 근무한 자에 한함.

- 실업급여의 수령기간: 취업기간의 50%에 해당

- 각종 보험금의 유기적 연결: 실업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금 수령, 실업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6주동안 실업보험금 수령하고 이후에는 의료보험에서 실업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

○ 고용보험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촉진, 취업 및 자영업지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촉진, 소기업 영업시 창업지원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연방노동청 실업발생시 근로자의 생계 보장하며 실업수당, 실업부조, 조기퇴직수당으로 구성
- 직장 알선 및 직업상담: 구직자와 구인자의 탐색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노동청의 전국적인 직장알선망 활용
 - ※ 2003년 이후 달라진 고용보험정책
- 구직활동지원의 강화를 위해 구직활동보조금을 일괄 지급 (약 2,500유로)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자를 민간취업알선기관에 소개하고 알선기관에 소개비(2,500유로) 지원
- 취업안정보조금 지급

3. 고용보험의 운영 주체 및 재원

○ 고용보험의 운영 주체는 고용촉진업무를 수행하는 연방노동청

-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운영은 연방고용청이 관장하며 하부기관인 주노동청(Landesarbeitsamt) 산하의 지방노동청(Arbeitsamt)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
-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

○ 재원은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

4. 최근의 고용정책 개혁

○ 연방노동청(BA)을 현대적 노동시장의 서비스 공급자로 전환

- 실업자 친화적이고 효율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해 연방노동청에 인

력서비스사무소(PSA: Personal Service Agenture)가 설치되고, 각 지방노동청(Arbeitsamt)은 직업센터(Job-Center)로 전환

- 2001년 독일의 대량 실업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정책 모색을 위한 연방노동청의 구조개혁 및 노동시장의 개혁과 관련하여 하르쯔 위원회(Hartz-Commission) 설치
 - Hartz 위원회의 주요 개혁안
 -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한 직업센터의 설치
 - 가족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실업자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가족친화적인 직업중개와 신속한 직업안선
 - 중년 실업자(55세 이상)에 대한 계약직 고용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연계체제(bridge system) 구축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혜를 포기하는 대신, 사회부조를 통한 생활보호를 받게 함.
 -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결합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
 - 실업수당 I: 보험금으로 충당되는 본래의 보험급여로 종전의 최장 32개월까지 가능하던 지급기간을 55세 미만 실업자 12개월, 55세 이상 실업자 18개월로 단축
 - 실업수당 II: 세금으로 충당되는 필요에 따른 급여로서 취업능력이 있는 장기 실업자에게 기존의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종전의 사회부조 수준으로 하향조정
 - 고용확대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
 - 모든 직업센터에 인력서비스사무소(PSA)를 설치하여 장기적인 고용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직업안선 및 중개
 - 1인에 의한 영리활동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회사(Ich-AG)와 개별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가사서비스를 Mini-Job으로 규정하여 불법노동의 제거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 창출 촉진
- ※ Min-Job의 수입상한선: 매월 500유로, 이중 10%만 사회보험부담금으로 지불

- Job Floater를 통해 임시 수습기간 만료 후 실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대부 형식의 재정지원 정책 시행

제5절 간병보험제도

1. 간병보험의 개요 및 특징

- 1995년 세계최초로 독일에서 사회보험으로 도입
 - 간병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법적·재정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가정과 간병/요양시설 내에 간병서비스 체계를 구축
 - 간병서비스 체계: 방문간병을 우선으로 하되, 방문간병이나 부분입원 간병이 불충분할 경우 완전 입원간병도 가능
 - 완전입원 간병비용 중 간병과 직결된 서비스의 비용은 간병보험사 전액부담의 원칙

2.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

- 가입자: 의료보험 의무가입자 및 그의 친족피부양자가 간병보험의 의무가입자로 국민의 90%가 간병보험의 의무가입자에 해당
 - ※ 사적 간병보험 의무가입자: 사적 의료보험 의무가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사적 간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보험급여
 - 간병서비스 급여, 현물급여 및 현금급여로 구분
 - 급여 수준은 피간병인의 간병의 필요성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책정
- 가족간병인을 위한 사회보장: 가족구성원이 직접 간병을 위해 직장생활을 포기해야 할 경우, 간병보험사는 해당인의 연금보험가입 및 상해보험가입을 보장해야 함.

- 보험료: 보험료 징수의무가 적용되는 월소득액과 의료보험이 정하고 있는 월소득 상한선 내의 1.7%를 징수하고 보험료는 가입자와 가입자의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3. 간병보험의 운영방식

- 간병보험의 1차 전달자는 간병보험사로 모든 의료보험사는 내부에 간병보험사를 설치하고 간병보험사는 간병보험 업무를 전담·수행
 - 간병보험사는 독자적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간병보험사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
- 의료보험사의 임의 및 의무 가입자가 간병보험사의 회원이 되고 회원자격은 2개월 이상의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상실됨.

4. 간병보험의 재정운용 및 재정조달

- 재정운영: 회원이 납부한 보험료 및 기타수익금에 의해 운영
- 자금의 적용 및 행정: 간병보험사의 재정은 운영자금과 예비자금으로 구성되며, 자금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예비자금의 확보와 연방 준비금의 조달을 위해 사용
 - 간병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와 보험행정 업무에 지출되는 비용은 간병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간병보험사 간의 재정 균형을 이루게 함.
 - 재정균형 업무는 연방보험국이 담당하고, 이를 위해 연방보험국은 연방준비금 구축

5. 간병보험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사항

- 거택간병, 즉, 방문간병을 우선시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간병보험의 도입은 노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로 작용

-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 이에 따라 지출되는 의료적 서비스와 간병 및 요양서비스의 비용 증가는 기존 의료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 간병보험 수급자: 약 200만(2004) 중 60세 이상이 166만명으로 83%차지
- 1998년 이후 간병보험 급여의 지출이 간병보험료를 통한 수입을 상회함으로써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간병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Ⅲ. 독일의 사회부조

제1절 사회부조(Sozialhilfe) 제도

1. 사회부조제도의 개요 및 특징

- 한국의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사회부조는 1962년 시행되었고, 현금부조형태인 생계부조, 일회적 서비스, 긴급부조가 근간을 이룸.
 - 생계부조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기준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짐.
 - 일회적 서비스는 일회성의 특정욕구에 대해 현금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사비용 등의 청구 가능
 - 긴급 부조는 돌발 상황 - 질병, 장애, 임신, 고령 등- 에 처한 개인을 도와주는 것

2. 생계급여의 내용

- 수급자 현황: 2004년 약 283만명(3.3%)에 이르고 있으며,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아동
 - 18세 이하의 아동 1만1천명이 생계급여 대상으로 아동 사회부조 수급률은 약 6.7%이나 65세 이상 인구의 수급 비율은 1.3%에 불과
- 생계급여액: 각 주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가구주 혹은 독신자에 대해 평균적으로 월 340유로가 제시

〈표 1〉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가구 구성원별 월 생계급여액 (2005년)

(단위: 유로)

	가구주 및 독신자 최저생계비	가구 구성원	
		14세 미만(60%)	14세 이상 (80%)
독일 평균	340	204	272
구 서독	345	207	276
구 동독	331	199	265

○ 월 최저생계비는 지역뿐 만이 아니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데, 특히 7세 이하의 부양 자녀를 둔 경우 그 자녀를 위한 부양비가 독신부모에게 좀 더 많이 지급되고 있음(표 2 참조)

- 즉, 독신부모와 함께 사는 7세 이하 아동에 대해 124유로(구 서독) 혹은 119유로(구 동독지역)를 추가로 책정함으로써 양부모보다 독신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사회가 부분적으로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줌.
- 이는 사회부조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는 한부모 가정임을 고려한 사회부조 급여의 책정이라 사료됨¹⁾.

주1) 가구별 사회부조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구가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독신녀, 독신남, 기타 가구,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 순으로 나타난다 (Adema et al., 2003).

〈표 2〉 생계급여의 구성 내용

(단위: 월/유로, 2005년 1월 1일 현재)

욕구별 가구유형	최저생계비	추가욕구	주거비	난방비	합계
구 서독지역					
독신 가구	345	-	276	47	668
무자녀 부부	621	-	355	64	1,040
부부 +					
아동 한명	843	-	420	71	1,334
아동 두명	1,065	-	476	71	1,612
아동 세명	1,287	-	532	85	1,904
독신 부모 +					
7세 이하 아동 한명	552	124	355	64	1,095
7~14세 아동 두명	828	124	420	71	1,443
구 동독지역					
독신 가구	331	-	209	44	584
무자녀 부부	596	-	288	56	940
부부 +					
아동 한명	809	-	333	66	1,208
아동 두명	1,022	-	375	75	1,472
아동 세명	1,235	-	418	77	1,730
독신 부모 +					
7세 이하 아동 한명	530	119	288	56	993
7~14세 아동 두명	795	119	333	66	1,313

주: '-' 존재하지 않음.

자료: BMGS(2005).

○ 생계급여 선정

- 생계급여는 꼭 필요한 생계 유지비를 스스로의 힘으로 조달할 수 없거나 주변의 다른 이로부터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

- 생계급여 신청의 자격은 우선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생계부조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수급권자의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StBA 2003).
-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자산조사의 단위는 가구이고, 소득에는 임금 및 월세, 임대료,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급여, 주택수당과 같은 사회급여도 포함되며, 재산에 대한 기준은 낮은 편으로 주택 소유시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 ※ 청구자: 1,278유로, 배우자; 614유로, 아동은 각각 256유로
- 부양가족에 대한 의무: 직계선상에 있는 친족에게 부여되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의미
 - 그러나 직계 자녀 외에 다른 가족 성원이 부양 의무를 가지지 않더라도, 부양 의무를 갖지 않는 가족 성원의 소득이나 자산 역시 부양 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계산에 적용됨(정재훈 2004).
- 급여대상의 선정 절차: 빈곤상황에 처한 개인이 시·군의 사회국(Sozialamt)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회복지 담당관이 욕구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신청자의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임금, 월세, 보험료 및 각종 사회급여(주택수당, 아동수당, 실업수당)등이 포함됨.

3. 긴급 부조의 내용

- 긴급 부조 수급자 현황: 1962년 실시된 이래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
 - 1980년 초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긴급 부조 수급자 수는 1985년과 1993년 사이 급증하여 1993년의 경우 약 1.9백만에 이르는 수급자 수를 기록하고 있음.
 - ※ 이는 통일 이후 동독 지역 내 보호인구의 유입이 큰 영향을 미침('02년 1.56백만 명이 긴급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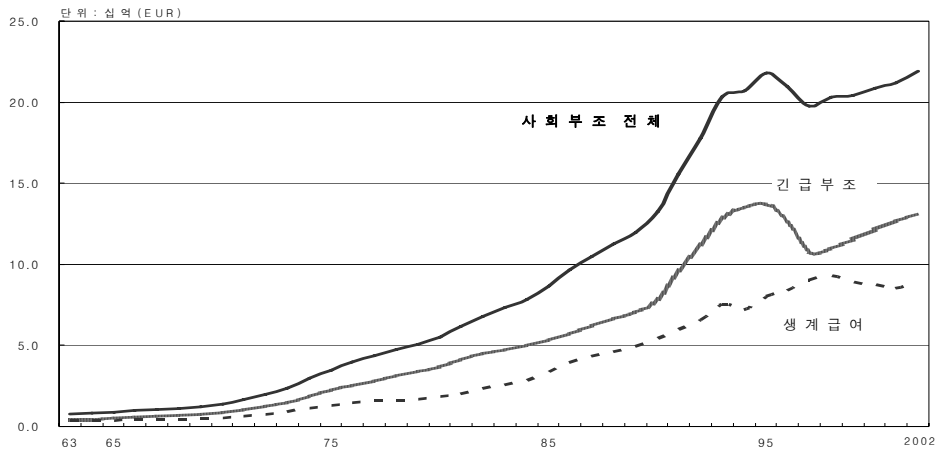
○ 지원 내용: 질병, 장애인, 요양 보조에 대한 서비스

- 질병치료에 대한 보조는 일반 병원 및 치과치료, 의약품 구입, 병원입원 치료 및 간병치료, 수유 및 임신에 이르는 비용까지 광범위한 부조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독일 거주 외국인이 차지(2003년 약 65만명 혜택)
 - 2002년의 경우 전체 긴급부조 대상자 중 19%가 외국인이었던 반면, 질병 부조의 경우 37%가 외국인으로 나타남(StBA 2003).
- 장애인을 위한 통합서비스의 경우 약 60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음.
 - 장애인 통합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이나 노동청을 통해 장애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아동·전업주부·실업자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따라서 장애인 통합 서비스 수혜 대상 연령은 다른 긴급 구조 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통합 서비스의 종류: 의료적 치료, 장애 예방을 위한 예비 조치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 요양원 생활, 약물 및 심리 치료가 그 대상임.
 - 또한 장애 상태를 교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보조 기구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를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포함되어 있음.

○ 사회부조의 재정비용 현황

- 사회부조의 도입이후 사회부조 지출은 1993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통일에 의한 수요증가로 해석 가능
- 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부조 비용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재가 요양(1995년)에서 시설 요양(1996년)까지 요양보험이 적용되었던 1996년에는 확연한 감소폭을 읽을 수 있음.

[그림 1] 사회부조 지출액 추이



자료: StBA(2003)

- 사회부조의 지출구조: 긴급부조를 위해 생계급여보다 많은 비용 지출
 - 1963년 사회부조의 도입 당시 긴급 부조의 지출 비용은 전체의 비용의 54%를 차지했으나, 1994년에는 66%까지 올라감.
- 1990년대 중반 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비용이 감소했으나, 2003년 전체 사회부조비용 중 61.6%를 긴급부조비용으로 지출하고 긴급부조 내 장애인 통합 서비스는 긴급부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독일 사회부조의 중요성 정도를 예시

〈표 3〉 독일의 사회부조 비용

(단위: 백만 유로)

	1999	2001	2003
사회부조 전체 비용	22,978	23,942	25,590
생계 부조	10,044	9,669	9,817
긴급 부조	12,934	14,273	15,773
요양서비스 보조	2,901	2,905	3,005
질병치료 보조	1,206	1,279	1,487
장애인 통합 서비스	8,522	9,764	10,930

자료: StBA(2004)

4. 사회부조의 재정

○ 사회부조의 재정은 연방과 주가 나누어 분담

- 연방은 외국 거주 독일인 관련 비용만 부담하고 주와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조달
- 통상적으로 지방세의 약 6~7%가량이 생계급여로 지불

제2절 취약인구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1. 장애인 복지 서비스

○ 독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요

- 기본원칙: 재활조치가 연금급여(현금급여)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연금급여는 재활조치에 의해 직업 또는 경제활동능력의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의 개시가 이루어짐.

-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는 없으며, 사회급여체제에 속한 각 담당기구별로 장애인 복지의 특수 영역을 담당
- 이들 담당기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 관련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움.

○ 장애인에 대해 제공하는 급여형태

- 직접적·간접적 소득보장, 장애연금, 재활급여 등 급여형태가 다양함.
- 소득보장의 경우 직업 또는 경제활동능력의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정될 경우 직접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특정 요건(과거 5년 동안 적어도 3년의 각출료 납부)을 충족해야만 함.
 - 이외에 직접적 소득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부상연금, 의료재활 등이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일괄급여를 통해 일정액의 손해보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됨.
- 장애연금의 경우 독일 공적연금(GRV)체계에서 2000까지는 직업적 장애(Occupational disability)^{주2)}와 근로불능(Incapacity to work)^{주3)}의 2가지로 장애를 구분해 직업적 장애의 경우는 근로불능에 비해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고, 미숙련 근로자에게는 직업적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00년 12월 장애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직업적 장애연금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1961년 이전 출생자까지만 해당), 기존의 근로불능을 근로능력감퇴(Decreased ability to work)^{주4)}로 대체함.
- 장애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애연금이지만, 반드시 수급이전 재활을 받아야 하고, 또한 장애발생 이전 5년 가운데 최소한 3년 이상 근로를 하여

주2) 직업적 장애는 손상(impairment)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지적, 정신건강측면에서 근로능력이 50% 미만 감소한 경우를 의미한다.

주3) 근로불능은 직장에서 유급 고용이 될 수 없거나 합당한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를 의미한다.

주4) 근로능력감퇴는 일일 3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다면 완전장애(fully disabled), 3~6시간은 부분장애(partially disabled)로 정의한 것이다.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이는 독일의 경우 장애연금이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비기여 장애연금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

〈표 4〉 장애연금 최저 수급요건(2001년)

연금종류	연금수급 가능연령	특정조건	자격요건		특별 요구사항
			기여기간1)	총 credit 기간2)	
장애연금	65세	2000년 이전: 직업적 장애, 근로불능 2001년 이후: 근로능력감퇴	장애 발생전 5년		수급전 5년 가운데 3년간 보험료 납부
중증장애인을 위한 노령연금	60세	중증 장애인	-	35년	-
장기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63세	-	-	35년	-

주: 1) 모성 휴가, 부성 휴가(1993년 이후 3년), 군복무 기간 포함

2) 기여 및 비기여기간(질병, 임신, 양육, 실업자, 직업훈련자) 포함

자료: 변용찬 외,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2003:153).

- 2001년 1월 1일 이후 장애연금관련 개혁이 독일에서 이루어졌는데, 주요 변경사항은 장애연금을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조기에 수급 개시가 이루어질 경우 감액되도록 변경한 것임.
 - 즉, 표준장애연금 수급연령이 63세가 아닌 그 이전에 수급대상자가 될 경우 매달 0.3%씩 감액되도록 함.

○ 장애인 할당고용정책

- 1919년 처음으로 할당고용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2000년 중증장애인 실업해소법의 개정을 통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피고용인의 5% 이상(공공부분은 6%)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담금제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차등제로 변경함

으로써 의무고용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강화

※ 독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평가받고 있으나, 2002년부터 장애인 실업률은 점차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실업률 1999년 대비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노인 복지 서비스

○ 독일 노인복지정책의 개요

-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는 연금보험과 기초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의료 보장제도로는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이 작동
- 국민연금제도가 빈곤방지보다는 생활수준보장을 강조함에 따라 노인복지는 보험의 원리가 아닌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부조를 통해 제공
-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문제는 기초소득보장제도 하에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표 5〉 노령연금 최저 수급요건(2001년)

연금종류	연금수급 가능연령	특정조건	자격요건		특별 요구사항
			기여기간1)	총 credit 기간2)	
실업급여 후 또는 고령기에 부분근로 후 수급받는 노령연금	60세	18개월 중 12개월 실업자 또는 고령자로서 2년 동안 파트타임 근로자	15년	-	수급전 10년 가운데 8년간 보험료 납부
노령연금(여성)	60세	여성	15년	-	40세 이후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장기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63세	-	-	35년	-
표준노령연금	65세	-	5년	-	-

주: 1) 모성 휴가, 부성 휴가(1993년 이후 3년), 군복무기간 포함
 2) 기여 및 비기여기간(질병, 임신, 양육, 실업자, 직업훈련자) 포함
 자료: 변용찬 외,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2003: 153).

○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내용

- 2001년 독일 의회에서 국민연금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부조방식의 기초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3년부터 동 법률이 발효
-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의 목적은 빈곤상태에 처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사회부조제도와는 독립적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 추가수당, 기타 서비스 급여가 제공됨.

○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재원

- 재원은 전액 조세재원으로 충당이 되며, 연방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409백만 유로를 주정부나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음.

3. 아동복지 서비스

○ 독일 아동복지 서비스의 개요

- 독일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표적 정책은 아동급여(Kindergeld)로 일반적으로 18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며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없음.
- 아동급여 외에도 아동양육수당(Erziehungsgeld)이 있음.

○ 아동급여의 내용

- 독일 현지에 거주하거나, 유럽연합(EU) 혹은 유럽경제구역(EWR)에 속하는 국가에서 생활할 경우 2005년 현재 3번째 아동까지는 월 154유로, 4번째 아동부터는 179유로가 매월 지급됨.
 - 위 액수는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결정되어 현재까지 가구에 거주하는 개별

아동으로 계산하여 보호자에게 지급되고 있음.

- 아동관련 사회부조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 급여의 17~28%가 되고, 2명의 아동이 있는 편부모 가족은 급여의 20~32%가 됨. 또한 7세미만의 아동은 가구주 표준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고, 7~14세는 65%, 14~18세는 90% 그리고 18세 이상 아동은 80%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매우 어린 아동을 둔 저소득부모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지급하는 아동양육급여를 최대 월 306유로로 받을 수 있음.
 - 적용현황을 독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아동수당 수급자는 점점 증가하여 2002년에는 9,059천명이었으나 2004년 12월에는 9,193명이 되었고 급여지출 역시 2002년에는 28,831백만유로에서 2004년에는 29,020백만유로로 증가하였음.

〈표 6〉 아동급여(Kindergeld) 수급자 및 급여지출 현황

(단위: 천명, 백만, euro)

	2002년	2003년	2004년
수급자	9,059	9,118	9,193
급여지출	28,831	28,880	29,020

주: 매 연도 12월 자료임.

자료: 독일통계청 자료(2005. 2. 22일 자료)

- 급여의 지급: 가구에 거주하는 개별 아동으로 계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에게 지급되고 아동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을 경우 실제 아동과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됨.
-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젊은 계층으로서 소득이 연 7,680유로 미만인 경우 최대 27세 까지 지급 가능

○ 아동양육수당의 내용

- 소득제한이 있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개념으로 아이가 2살이 되지 않았으며, 30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
- 소득의 제한: 첫 6개월간 부모의 순소득은 30,000유로, 한부모의 경우 23,000유로를 넘지 않아야 지급가능하고 이후 7개월부터는 양부모의 경우 16,500유로, 한부모의 경우 13,500유로를 넘지 않아야 아동양육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소득제한은 가족과 함께 사는 아동이 한명 많아질 때마다 3,140유로씩 증가함(BMFSFJ, 2005a).

제3절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1. 의료부조

- 의료부조의 역사: 독일의 의료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전 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토대로 질병이나 직업재해, 임신, 노령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전 국민의 공공 의료보호를 토대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GKV)은 독일의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지 100년이 넘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강제 의무보험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함.
 - ※ 현재 전 국민의 89%, 73백만이 공적 의료보험(GKV)에 가입하고 있음
 - 가입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되는데 의무가입자의 비중이 훨씬 크며, 의무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에 따른 보험 납입금은 차등 부과되면서 혜택은 동일하여 일정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짐(홍미령, 2001).
 - 그러나 여전히 독일 보건시스템은 비효율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과잉 진료, 진료에 대한 불만, 잘못된 진료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2003년 정부와 야당 모두가 승인한 보건개혁패키지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러한 보건개혁은 2006년까지 연간 230억 유로를 비용절감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공적 의료보험 근대화 법을 통해 2004년 1월 모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혜택 적용
 - 사회부조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치과나 의원 방문시 4분기 당 10유로의 요금 적용
 - ※ 기본규정액의 2%, 만성 질환자의 경우 1%
 - 한도 초과시 한해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의료적 보호를 위한 모든 비용은 질병금고에서 전적으로 인수함.
 - 고가의 식이가 필요한 환자, 회복기 환자, 장애인, 질병이나 장애 위험이 있는자는 생계비부조 계산 시 적정한 금액의 추가수요 인정에 대한 청구권 보장

2. 요양(수발)부조

- 요양과 관련된 비용 또는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요양이 필요한 자를 지원
- 요양부조 대상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중 반복되는 용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요양부조' 청구권이 있음.
 - 이는 요양필요자가 요양급여를 스스로 부담할 수 없고 다른 곳(요양보험 등)으로부터도 받지 않을 때 지급
- 요양부조의 내용
 - 요양부조는 자택요양을 우선 보장함.
 - 이 경우 가급적 친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이 수발(간병)을 맡아야 함. 이 때 요양필요자에게 간병인에 대한 적정한 비용이 상환됨.
 - 요양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요양 중증도에 따른 차등 금액으로 요양수당이 지불

○ 요양필요도에 따른 요양수당(2005년 기준)

- 1등급(두드러지게 요양이 필요): 최소한 매일 1회 도움필요 - 매월 205유로
- 2등급(중증 요양필요): 최소한 매일 3회 도움필요 - 매월 410유로
- 3등급(최중증 요양필요): 매일 수시로-밤에도-도움필요 - 매월 665유로

3.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개요

-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

○ 주거급여의 내용

- 주거급여의 유형: 세입자 보조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유지비보조가 있는데, 대부분 세입자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 (2003년 현재 93%)
- 주거급여액: 월 평균 주거급여는 2003년의 경우 약 107유로
- 주거급여에 대한 재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
- 주거급여 신청자격: 법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가구원수, 가구소득, 가구의 주거비 수준 등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통 1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음.
※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보조를, 주택소유자의 경우 유지비 보조

〈표 7〉 주거급여 수급자 분포현황(2003)

	비경제활동자			실업자	취업자	계(%)
	총	퇴직자	학생/사회부조수급자			
구 동독	33.1	21.8	11.3	48.1	18.8	100.0
구 서독	43.6	27.8	15.8	31.2	25.2	100.0

자료: BMGS (2005a)

-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가장 높은 소득기준인 지역 6의 경우 2005년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이 1830유로를 넘지 않아야 주거급여 신청 가능).
- 또한 지역유형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임대료 및 유지비의 상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임대나 주거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이보다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표 8〉 지역유형별 가구규모에 따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료 및 유지비(2005) 상한선

(단위: 유로)

가구원수	지역유형					
	I	II	III	III	V	VI
1인	265	280	300	325	350	370
2인	320	345	365	395	425	455
3인	385	410	435	470	505	540
4인	445	475	505	545	590	630
5인	510	545	580	625	670	715
이후 추가 1인시	60	65	70	75	80	90

자료: BMVBW(2005)

-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급여율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2001년 평균 급여는 약 50% 이상 증가하였고, 수급 가능한 소득기준 역시 증가하였음.
- 이는 아동이 있는 가구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며 단신은 40%가량이 됨.

4. 교육지원

○ 공공교육의 원칙에 입각한 독일 교육지원정책

-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신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그들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제공
-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상 의무교육을 받음.
 - ※ 6~10세의 어린이는 누구나 초등학교(Grundschule)에 다니고 독일어가 서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추가의 수업료 없이 독일어 수업을 보충해 주고 있음. 이후 각자의 진로에 따라 직업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el),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 고등학교(Gymnasium)에 진학하게 됨.

○ 연방교육촉진법(BAföG)에 근거한 교육진흥정책

- 정부가 대여하는 장학금제도로 직업·실업·인문학교 등 일반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10학년 이상 혹은 각종 일반 및 직업전문대학의 학생이면 신청가능
- 장학금은 부모의 소득액에 따라 조정되어 보조금 또는 용자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차등 지급됨.
 - 예를 들어 2005년 현재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 경우 377유로를 받지만, 같이 살지 않을 경우 생활비 외 주거비를 추가하여 총 466유로를 받고 있음 (BMBF, 2005).

5. 근로지원 -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 실업급여의 개요

-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사회부조(Sozialhilfe)가 있음.
- 그러나, 최근 실업자수 5백만명 시대를 맞아 집권당인 독일 사민당은 최우선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자를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에 전방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음.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하르츠 위원회(Harz Commission)를 만들었고 시차를 두고 하르츠 I, II, III, IV를 발표함.
- 2005년 1월부터 발효한 하르츠 4(Harz IV)는 독일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고 실업자가 조기에 실업상태를 탈출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실업급여의 내용

- 실업급여 I: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종전의 실업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3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었던 것을 55세 미만 실업자 12개월, 55세 이상 실업자 18개월로 단축하였음.
- 실업급여 II: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임.
 - 노동능력이 있는 장기실업자의 경우 기존의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와 사회부조(Sozialhilfe)를 통합하여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로 통칭하고 그 지급 수준은 종전의 사회부조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음.

〈표 9〉 실업급여 II의 지급현황 (2005)

수급자			
단독가구 한 부모 배우자가 미성년일 경우	19세 이상 배우자	15-18 세 이하 아동	14세 이하 아동
100%	90%	80%	60%
구 서독지역 (동베를린 포함)			
345 유로	311 유로	276 유로	207 유로
구 동독지역			
331 유로	298 유로	265 유로	199 유로-

출처: BA(2004)

- Harz IV에 따라, 2.8백만 사회부조 수급자 중 8십만에서 9십만명의 근로능력자들은 차후 사회부조 대신 새로운 실업급여 II를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근로능력자란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함^{주5)}.
 - 또한 2.6백만에 달하는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한 실업급여 II를 지급받게 됨.
- 하르츠 개혁안은 장기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감축하는 등 독일 사회복지지출의 전반적인 감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주5) 구 서독의 경우 ALG II 수급자의 약 43%가 예전의 사회부조 수급자들이고, 구 동독의 경우 이의 수가 약간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 록: 사회법령 제12집 - 사회부조

Sozialgesetzbuch Zwölftes Buch(SGBXII) - Sozialhilfe -

- 본 부록은 2005년 1월 1일로 효력을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법령 제12집의 사회부조법에 대한 개요를 소개함주6).

- 새로운 사회부조법은 사회부조의 급여와 전제조건 외에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시의 기초보장도 담고 있음.

- 사회법령집(Sozialgesetzbuch) 구성
 - 사회법령집은 전체 사회복지법을 담고 있음
 - 제1집: 일반적 부분
 - 제2집: 구직자 기초보장
 - 제3집: 노동지원
 - 제4집: 사회보험
 - 제5집: 의료보험
 - 제6집: 연금보험
 - 제7집: 재해보험
 - 제8집: 어린이 및 청소년 부조법
 - 제9집: 장애인 재활 및 참여
 - 제10집: 행정절차
 - 제11집: 공적 요양보험
 - 제12집: 사회부조 (본 부록에서 소개)

주6) 사회부조법의 번역을 도와주신 독일 브레멘(Bremen) 대학의 이인자 님께 감사드립니다.

목 차

제 1 장 일반규정

- 제1조 사회부조의 과제
- 제2조 사회부조의 하위성
- 제3조 사회부조 기관
- 제4조 협력
- 제5조 비 영리 사회사업과의 관계
- 제6조 전문 인력
- 제7조 연방 주들의 과제

제 2 장 사회부조의 급여

- 제1절 급여의 기본원칙
- 제8조 급여
- 제9조 개 경우의 특수성에 따른 사회부조
- 제10조 급여 제공
- 제11조 자문과 지원, 활성화
- 제12조 급여 협약
- 제13조 시설에 대한 급여, 다른 급여의 상위
- 제14조 예방과 재활의 우선
- 제15조 예방적 급여와 추후의 급여
- 제16조 가정에 알맞은 급여

제2절 급여 청구권

- 제17조 청구
- 제18조 사회부조의 개시
- 제19조 급여 수급권자
- 제20조 부부관계와 유사한 공동체
- 제21조 제2집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별 규정
- 제22조 직업교육생에 대한 특별 규정
- 제23조 외국인에 대한 사회부조
- 제24조 해외에 있는 독일인에 대한 사회부조
- 제25조 기타 다른 비용의 상환
- 제26조 제한, 차감(상쇄) 계산

제 3 장 생계비 부조

- 제27조 필수 생계비
- 제28조 규정필요(Regelbedarf), 규정액(Regelsatz)의 내용
- 제29조 주거와 난방
- 제30조 추가필요
- 제31조 1회적 필요
- 제32조 의료보험과 요양보험 보험료
- 제33조 대책마련 분담금
- 제34조 특수한 경우에서의 생계비 부조
- 제35조 시설 내에서의 필수 생계비
- 제36조 필요 충족의 추측
- 제37조 보완 하는 대부(추가 대부)
- 제38조 일시적 곤궁상황인 경우에서의 대부
- 제39조 급여 제한
- 제40조 명령권한

제4장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

제1절 기본원칙

- 제41조 급여 수급권자
- 제42조 급여 규모
- 제43조 재산 사용(투입)과 생계비 청구 시 특수성

제2절 절차 규정

- 제44조 특수한 절차규정
- 제45조 지속적이고 전적인 생계능력 감소의 확인
- 제46조 연금 보험기관과의 협력

제5장 의료부조

- 제47조 예방적 의료부조
- 제48조 질병 시 부조
- 제49조 가족계획을 위한 부조
- 제50조 임신과 해산 시 급여
- 제51조 불임시술 시 부조
- 제52조 급여 제공, 사례금

제 6 장 장애인의 편입부조

- 제53조 급여 수급권자와 과제
- 제54조 편입부조 급여
- 제55조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
- 제56조 그 외 작업소에서의 부조
- 제57조 담당기관에 따른 개인적 예산

- 제58조 전반적 계획
- 제59조 보건 위생국의 과제
- 제60조 명령권한

제 7 장 요양(수발) 부조

- 제61조 급여 수급권자와 급여
- 제62조 요양금고의 결정에 구속
- 제63조 자택 요양
- 제64조 요양수당
- 제65조 기타 다른 급여
- 제66조 급여 경합

제 8 장 특수한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부조

- 제67조 급여 수급권자
- 제68조 급여 규모
- 제69조 명령권한

제 9 장 기타 다른 생활상태에서의 부조

- 제70조 가사 계속이행을 위한 부조
- 제71조 노인부조
- 제72조 맹인부조
- 제73조 그 밖의 다른 생활상태에서의 부조
- 제74조 장례비용

제 10 장 시설들

- 제75조 시설들과 서비스

- 제76조 합의 내용
- 제77조 합의 체결
- 제78조 비 정상적인 해약 고지
- 제79조 기본계약(총괄계약)
- 제80조 중재 부서
- 제81조 명령권한

제 11 장 수입과 재산의 사용(투입)

제 1 절 수입 (소득)

- 제82조 수입의 정의
- 제83조 목적과 내용에 따라 규정된 급여
- 제84조 기부금

제 2 절 제 5 장 내지 제 9 장에 따른 급여를 위한 수입 한도

- 제85조 수입한도
- 제86조 차이가 나는 기본 기여액
- 제87조 수입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의 사용(투입)
- 제88조 수입한도를 넘지 않는 수입의 사용(투입)
- 제89조 한꺼번에 여러 필요 시 수입의 사용(투입)

제 3 절 자산 (재산)

- 제90조 사용(투입)될 수 있는 자산
- 제91조 대부

제 4 절 계산의 축소

- 제92조 장애인인 경우의 계산

제5절 타인의 의무

- 제93조 청구권이 넘어감(양도됨)
- 제94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
- 제95조 사회급여의 확인

제6절 명령권한

- 제96조 명령권한

제 12 장 사회부조 기관의 관할

제1절 사안적 관할과 공간적 관할

- 제97조 사안적 관할
- 제98조 공간적 관할
- 제99조 차이가 나는(서로 다른) 실행의 유보

제2절 특별 규정

- 제100조 독일과 스위스 간의 구호협정에 근거한 관할
- 제101조 관청규정과 도시국가-약관 (역주: 도시자체가 연방의 한 주인 브레멘, 함부르크, 베를린이 도시국가이다)

제 13 장 비용

제1절 비용 상환

- 제102조 상속인을 통한 비용 상환
- 제103조 잘못이 있는 행동의 경우에 비용 상환
- 제104조 부당하게 제공된 급여에 대한 비용 상환

제105조 이중 급여 시 비용 상환, 상환 필요 없는 주거비용

제2절 사회부조 기관 간의 비용 상환

제106조 시설 내에 체류 시 비용 상환

제107조 다른 가정에서 숙식 시 비용 상환

제108조 해외에서 귀국 시 비용 상환

제109조 통상 체류에서 제외

제110조 비용 상환의 규모

제111조 소멸 시효

제112조 연방 주 차원에서의 비용 상환

제3절 그 외 규정

제113조 상환청구권의 상위(우선)

제114조 그 외 규정에 따른 사회부조 기관의 상환 청구권

제115조 해외에서 귀국 시 비용상환에 대한 과도기 규정

제 14 장 절차규정

제116조 사회적 경험이 있는 제3자의 관여

제117조 정보제공 의무

제118조 심사, 행정 협조

제119조 연방의 위임으로 학문적 연구

제120조 명령권한

제 15 장 통계

제121조 연방 통계

제122조 조사 항목

제123조 보조 항목

- 제124조 주기성, 보고 시기
- 제125조 정보제공 의무
- 제126조 전달, 공고
- 제127조 지방자치 단체에 전달
- 제128조 추가 조사
- 제129조 명령권한

제 16 장 과도기 규정 및 최종 규정

- 제130조 외래 요양(수발)을 받는 자에 대한 과도기 규정
- 제131조 특수 프로그램인 마인쓰 모델로 인한 과도기 규정
- 제132조 해외에 있는 독일인에 대한 사회부조 지급을 위한 과도기 규정
- 제133조 기본법 제116조(1)항에 따른 독일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부조에 대한 과도기 규정
- 제133a조 시설 내에 있는 부조 수급자에 대한 과도기 규정
- 제134조 제2집의 효력 발생으로 인한 과도기 규정
- 제135조 제2차 법률 정화법으로 인한 과도기 규정
- 제136조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의 전제

1. 사회법령 제12집: 사회부조

2003년 12월 27일 자, 2005년 3월 21일 자 ‘사회법의 행정처리 간소화법 개정법률’의 제 10조를 통해 최종 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회부조의 과제

사회부조의 과제는 급여 수급권자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급여의 가능한 범위는,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정도까지다 ; 이를 위해 급여 수급권자도 본인의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급여 수급권자와 사회부조 기관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

제2조 사회부조의 하위성

- (1) 무엇보다 자신의 노동력, 수입, 자산을 사용해서 자조할 수 있거나, 필요한 도움을 타인으로부터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회급여기관으로부터 받는 자는 사회부조를 받지 않는다.
- (2) 타인 특히 부양의무자나 다른 사회급여 기관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된다. 사회부조법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가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법률규정에 근거한 다른 데서의 급여가 거부될 수는 없다.

제3조 사회부조 기관

- (1) 사회부조는 지역의 기관과 초 지역적 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 (2) 주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지역의 사회부조 기관은 시와 군이다. 주법을 통해 규정할 때에는, 향후의 지역 기관들이 이러한 과제의 양도에 동의하고, 그들의

급여 능력에 따라 본 법령집에 의한 과제의 완수에 적합하고 이러한 과제의 완수가 시·군의 전 지역에서 보장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 (3) 주들은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을 정한다.

제4조 협력

- (1) 사회부조 기관들은 그 법적 임무가 동일한 목표를 위한 것이거나, 급여 분배에 관여 되거나 관여되어야 하는 다른 부서와 특히 제2집, 8집, 9집에 따른 기관들 및 사회급여의 다른 기관, 재활 담당기관의 공동서비스 부서 및 연합회와 협력한다.
- (2) 급여의 균등한 또는 공동의 또는 보완하는 제공이 자문되고 보장되어 있다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작업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 (3) 인적 관련 데이터가 조사, 처리, 이용된다면, 자세한 것이 합의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제5조 비영리 사회사업과의 관계

- (1) 공법의 교회와 종교단체 및 비영리 사회사업 연합회의 고유한 사회적 과제가 있는 기관으로써의 위치와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한 활동은 본 법령집을 통해 침해 받지 않는다.
- (2) 사회부조 기관은 본 법령집의 시행 시, 공법의 교회와 종교단체 및 비영리 사회사업 연합회와 협력해야 한다. 이때 이들의 임무수행과 목표설정에 있어 독립성을 존중한다.
- (3) 협력은 사회부조와 비영리 사회사업 활동이 급여 수급권자의 행복을 위해 효과적으로 서로 보완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사회부조 기관은 비영리 사회사업 연합회를 사회부조영역 상의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 (4) 개별 경우에 있어 급여가 비영리 사회사업 연합회에 의해 제공된다면 사회부조 기관은 자신들의 조치 실행을 중지해야 한다. 이것은 현금급여 제공에는 유효하지 않다.
- (5) 일반적으로 사회부조 기관은 본 법령집에 따른 그들의 임무수행에 비영리 사회사업 연합회를 참여시키거나 이들에게 그러한 임무수행을 양도할 수 있다 연합회가 참여나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회부조기관의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이다.

- (6) 제4조 (3)항이 상응해서 적용된다.

제6조 전문 인력

- (1) 본 법령집에 따른 임무수행 시, 그들의 개성에 따라 이에 적합하고 통상 그 임무에 상응하는 직업 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필적할 만한 경험을 소유한 자가 종사한다.
- (2) 사회부조 기관은 전문 인력의 임무 완수를 위해 이들에게 적절한 전문적 연수를 보장한다. 이는 또한 서비스 업무 특히 상담과 지원의 이행을 포괄한다.

제7조 연방 주들의 과제

주에 있는 최고 사회복지 당국은 사회부조 기관의 본 법령집에 따른 임무 수행 시 이들을 지원한다. 이때, 당국은 특히 사회부조 기관들 간의 경험교환과 직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목적에 맞게 제공 및 심사하고 질 보장하는 도구(장치)의 개발과 시행을 후원해야 한다.

제2장 사회부조의 급여

제1절 급여의 기본 원칙

제8조 급여

사회부조는 다음을 포함 한다.

1. 생계비 부조(제27조 내지 제40조)
2.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제41조 내지 제46조)
3. 의료부조(제47조 내지 제52조)
4. 애인 편입부조(제53조 내지 제60조)
5. 요양(수발) 급여(제61조 내지 제66조)
6. 특수한 사회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부조(제67조 내지 제69조)

7. 기타 다른 생활상태에서의 부조(제70조 내지 제74조) 및 각 경우에 허용된 자문과 지원

제9조 개 경우의 특수성에 따른 사회부조

- (1) 생계비 부조의 경우, 급여는 개 경우의 특수성, 특히 개인이나 세대의 필요 종류, 지역의 상황, 자력과 자급에 따른다.
- (2) 급여 수급권자의 바램 급여의 구성에 따르는 은 그것이 적절한 한, 들어주어야 한다. 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이나 부분입원의 필요를 충당코자 하는 바램은 다르게는 필요가 충당될 수 없거나 충분히 충당될 수 없고 개경우의 특수성에 따라 그것이 필요한 때에만 그리고 시설과 본 법령집 제10장의 규정들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만 들어줄 수 있다. 사회부조 기관은 그 바램을 들어주는데 지나친 추가비용이 드는 것 같으면, 통상 그 바램을 들어 줄 수 없다.
- (3) 급여 수급권자의 바램에 따라 그들은 그들 종파의 성직자들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거주해야 한다.

제10조 급여 제공

- (1) 급여는 서비스 급여, 현금급여 또는 현물급여로 제공된다.
- (2) 서비스급여에는 무엇보다 사회부조 문제에서의 상담과 그 외 사회복지 사안에서의 상담과 지원이 해당된다.
- (3) 본 법령집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거나, 현물급여가 사회부조의 목표에 훨씬 더 잘 또는 더 경제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급여 수급권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한,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우위이다. 상품권과 그 외 다른 현금이 아닌 계산 형태는 현물급여에 포함된다.

제11조 자문과 지원, 활성화

- (1) 본 법령집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급여 수급권자는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지원

을 받는다.

- (2) 자문은 개인적 상황, 필요 및 자력과 자금 및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와 곤궁상황 극복을 위한 자조 강화에 해당된다.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는 또한 사회적 활동도 포괄한다. 곤궁상황 극복에는 또한 급여 수급권자에게 사회급여 수급능력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자문은 또한 요구된 예산 자문도 포괄한다.
- (3) 지원은 안내와 필요하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활동을 포함한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 가능한 방법에 접촉 준비와 동행을 포괄한다. 급여 수급권자가 무리 없이 어떠한 활동에 몰두 할 수 있다면, 지원에는 또한 활동의 제공 및 급여 수급권자의 준비와 동행도 포함된다. 지원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급여 수급권자가 부담스럽지 않은 활동을 받아들여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이에 대한 의무와 필요한 준비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4) 급여 수급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활동을 요구 받을 수 없다 :
 1. 생계능력 감소, 질병, 장애, 요양(수발)필요로 인해 활동을 할 상태가 아닌 경우
 2. 공적 연금보험의 정년(제6집의 제35조)에 해당되는 연령에 이르거나 연령을 넘을 경우
 3. 그 외 중요한 사유가 활동에 장애를 주는 경우, 특히 활동으로 인해 자녀의 정상적 양육이 위협 받을 수 있다면, 활동을 요구 받을 수 없다. 통상 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제8집 상의 주간시설이나 주간보호에서 자녀의 보살핌이 보장된다면 만 3세 이상인 자녀의 정상적 양육은 위협되지 않는다 : 사회부조기관은 자녀의 주간 보살핌을 위한 자리를 편부모가 우선적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밖에도 급여 수급권자에게 주어진 가사수행 의무나 친족의 간호 의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 (5) 비영리 사회사업 연합회, 법률 자문직의 일원, 그 외 부서의 자문과 지원에 대해 일단 안내되어야 한다. 채무자 상담소나 기타 다른 전문상담소를 통한 그 밖의 자문이 요구된다면, 그들의 이용에 대해 안내되어야 한다. 생계비 부조 급여를 필요하게 만드는 생활상태가 그렇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다면, 둘째 문장에 따른 자문의 적절한 비용이 인수되어야 한다. 다른 경우에도 비용이 인수될 수 있다. 비용 인수는 또한 채무자 상담소나 기타 다른 전문상담소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급여 협약

연장되는 급여의 개시 전이나 늦어도 개시 후 4주 이내에는 서면 작성된 급여협약에서 급여 수급권자의 상황 및 경우에 따라서는 곤궁상황 극복방법과 요구될 수 있는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가능성이 공동으로 확정되어 급여협약에 서명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요구된다면, 규정할 수 있는 필요(수요)를 근거로 한 지원계획이 작성되어서 급여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급여를 지급하는 목표와 관련해서 급여가 심사되어야 한다면, 급여협약에서는 이에 관해 상세하게 확정될 수 있다. 급여협약은 정기적으로 공동으로 검증되고 수정(보충)기록되어야 한다. 본 법령집에서 벗어나는 규정이 우선한다.

제13조 시설에 대한 급여, 다른 급여의 상위

- (1) 급여는 개 경우의 필요성에 상응해서 시설 이외의 필요충족(외래급여)에 대해, 부분 입원 또는 입원시설(부분입원 또는 입원급여)에 대해 제공될 수 있다. 입원시설이란 함은 그곳에서 급여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시설이다. 외래급여가 부분입원 및 입원 급여보다 우위이고 부분입원 급여가 입원 급여보다 우위이다. 적절한 입원시설에 대한 급여가 부담스럽지 않고 외래급여가 지나친 추가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래급여우선 원칙은 유효하지 않다. 이때 개인적, 가족의, 지역의 상황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요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격비교가 실시되지 않는다.
- (2) (1)에 의미하는 시설은 요양, 치료 또는 본 법령집에 따른 기타에 충당되어야 하는 수요나 양육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이다.

제14조 예방과 재활의 우선

- (1) 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급여는 제9집에 따라 이러한 급여와 관련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진다.
- (2) 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급여가 요구된 것으로 보이면, 사회부조 기관은 관할 재활기

관과 통합관청에 보고한다.

제15조 예방적 급여와 추후의 급여

- (1) 사회부조는 그를 통해 긴급한 곤궁상황이 전부 또는 일부 방지될 수 있다면 예방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제47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2) 사회부조는 또한 사전에 제공된 급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된다면, 곤궁상황이 제거된 후에도 이행되어야 한다. 제54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6조 가정에 알맞은 급여

사회부조의 급여에서는 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특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부조는 가족의 자조력을 고무하고 가족의 결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2절 급여 청구권

제17조 청구

- (1)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 사회부조 청구권이 존재한다. 청구권은 양도되거나 담보로 하거나 압류될 수 없다.
- (2) 평가가 불가능하지 않는 한, 급여 제공의 종류와 정도는 의무에 따른 평가 후에 결정된다. 평가 후 결정에 근거해서 급여가 제공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와 목표와 관련해서 결정이 검증되고 개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된다.

제18조 사회부조의 개시

- (1)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 급여를 제외한 사회부조는 사회부조기관이나 기관이 위임한 부서에 급여 전제조건이 존재한다고 알려지는 즉시 개시된다.
- (2) 예를 들어, 사회부조 신청 사실이 관할이 아닌 사회부조 기관이나 지방(시, 읍, 면)에

알려지면, 그를 통해 알려진 상황이 관할 사회부조기관이나 기관이 위임한 부서에 즉시 보고되어지고 서류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급여 전제조건이 나타나면, 첫째 문장에 따른 시점으로 사회부조가 개시된다.

제19조 급여 수급권자

- (1) 본 법령집의 제3장에 따른 생계비 부조는, 필요한 생계비를 자력과 본인의 자금으로, 특히 수입과 자산으로 마련할 수 없거나 충분히 마련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의 수입과 자산이 함께 고려되어진다. 미성년이고 미혼인 자녀가 부모나 한쪽 부모의 가계에 속하고 이들이 필요한 생계비를 본인의 수입과 자산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모나 한쪽부모의 수입과 자산도 함께 고려되어진다.
- (2)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은 본 법령집의 제4장의 특별한 전제조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만 18세 이상이고 지속적이고 전적으로 생계능력 감소된 자에게- 이들이 필요한 생계비를 자력과 본인의 자금으로, 특히 수입과 자산으로 마련할 수 없거나 충분히 마련할 수 없는 한- 지급되어야 한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수입과 자산 필요로 하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이 고려되어야 한다.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 급여는 제3장에 따른 생계비 부조에 우선한다.
- (3) 의료급여, 장애인 편입부조, 요양(수발)부조, 특수한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부조와 기타 다른 생활상태에서의 부조는 본 법령집의 제11장의 규정들에 따라, 수입과 자산으로부터 자금의 조달이 급여 수급권자, 그와 함께 사는 배우자나 동거인, 급여 수급권자가 미성년이고 미혼인 경우에는 또한 부모나 한쪽 부모에게 요구될 수 없는 한, 본 법령집의 제5집 내지 제9장에 따라 이러한 부조가 지급된다.
- (4) 부모나 한쪽 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신이거나 만 6세 미만인 친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부모나 한쪽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고려되지 않는다.
- (5) (1)내지 (3)항에 언급된 자에게 있어 (1)과 (2)상의 수입과 자산으로부터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거나 (3)상의 수입과 자산으로부터 자금의 조달이 요구될 수 있음에도 급여가 제공되었다면, 이들은 사회부조 기관에 그 만큼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채무

의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 (6) 시설에 대한 급여나 요양수당에 대한 수급권자의 청구는 수급권자의 사망 후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한, 급여를 공급했거나 요양을 행한 자에게 귀속된다.

제20조 부부관계와 유사한 공동체

부부관계와 유사한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회부조의 전제조건 및 규모와 관련해서 부부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36조가 상응해서 적용된다.

제21조 제2집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별 규정

제2집에 따라 생계능력 있는 자로써나 친족으로써 원칙적으로 급여 수급권이 있는 자는 - 제2집의 제22조(5)항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한, 제34조에 따른 급여를 제외하고는 생계비 급여를 받지 않는다. 관할 급여 기관 간에 관할권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면, 제2집의 제45조가 적용된다.

제22조 직업교육생에 대한 특별 규정

- (1) 연방 교육진흥법이나 제3집의 제60조 내지 제62조의 범주 내에서 원칙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해당 직업교육의 직업교육생은 생계비 부조 청구권이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 부조가 보조금이나 대부로 지급될 수 있다.
- (2) (1)은 다음의 직업교육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연방교육 진흥법(BAFöG)의 제(2)조 (1a)항에 기초해서 직업교육후원 청구권이 없거나 제3집의 제64조(1)항에 근거해 직업교육 보조금 청구권이 없는 자
 2. 그 필요(수요)가 연방교육 진흥법의 제12조(1)항 1번이나 제3집의 제66조(1)항 첫째 문장에 따라 산출되는 자

제23조 외국인에 대한 사회부조

- (1) 국내에 실제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본 법령집에 따른 생계비부조, 의료부조, 임신과 출산 시 사회부조 및 요양부조가 지급된다. 제4장의 규정들은 침해되지 않는다. 그 외에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 정당할 경우에만 사회부조가 지급될 수 있다. 첫째 문장에 따른 제한은 거주허가나 기한이 정해진 체류증을 소유하고 예정 상 계속(지속)해서 연방지역에 체류할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문장에 언급된 급여 이외에 그 외 사회부조가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률 조항은 침해되지 않는다.
- (2) 망명신청자 급여법의 제1조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는 사회부조 급여를 받지 않는다.
- (3) 사회부조를 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사회부조 청구권이 없다. 질병의 치료나 완화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의 제거나 중한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의 연기될 수 없고 불가피한 치료를 위해 부조가 지급되어야 한다.
- (4) 사회부조를 지급 받는 외국인은 해당되는 복귀 프로그램과 계속 이주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받아야 한다. 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5) 외국인이 외국인법의 공간적 제한에 위배해서 연방지역 중 한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제 체류지의 관할 사회부조기관이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급여만 제공할 수 있다. 체류법의 제23조, 23a조, 24조(1) 또는 제25조 (3)내지(5)에 따라 공간적 제한이 없는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이 체류증이 최초로 교부된 연방 주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방 지역 내 외국인이 외국인 난민의 법적 지위를 누리거나 기본법 제6조에 따라 부부와 가족의 보호 권리 행사를 위해서나 그와 대등하게 중요한 사유로 인해 다른 주로의 이주가 합당한 경우에는 둘째 문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4조 해외에 있는 독일인에 대한 사회부조

- (1) 통상체류지가 해외인 독일인은 급여를 못 받는다. 이는 극도의 곤궁상황이 불가피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국내로 귀국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1. 법적 사유로 인해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자녀의 보호와 양육
2. 시설 내 장기입원 보호나 중한 요양 필요성
3. 통치권의 강제력
- (2) 이에 대한 의무가 있는 체류국가나 제3자로부터 급여가 제공되거나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한 급여는 제공되지 않는다.
- (3) 급여 제공의 종류와 규모 및 수입과 자산의 사용(투입)은 체류국가 내 특수한 상황에 따른다.
- (4) 급여는 제18조와 다르게 신청된다. 신청인이 출생한 지역을 관장하는 초 지역적 사회복지 기관이 급여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출생지가 외국이거나 찾을 수 없다면 중재부서에 의해 지역의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 정해진다. 제108조(1)의 둘째 문장이 상응해서 유효하다.
- (5) 사회복지 수급 시 배우자나 반려자(동거인), 친족, 사돈이 함께 살면, 지역의 관할권은 이들 중 국내에서 출생한 최 연장자에 따른다. 이들 중 아무도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면 (4)에 따른 공동의 지역 관할 기관이 정해진다. 첫째 문장에 언급된 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면 관할권이 존속된다.
- (6) 사회복지 기관은 해외의 독일 업무부서와 협력한다.

제25조 기타 다른 비용의 상환

누군가가 급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급여- 사회복지가 제때에 적용되었다면, 제공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를 제공했다면, 당사자가 법적 또는 관계적 의무에 근거해서 스스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규모의 비용이 당사자에게 상환된다. 이것은 적정한 시한 내에 관할 사회복지 기관에 상환신청 제기 된 때에만 유효하다.

제26조 제한, 차감(상쇄)계산

- (1) 1. 급여의 지급이나 인상 전제조건을 초래할 의도로 수입이나 자산을 감소시킨 만18

세 이상인 급여 수급권자,

2.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경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급여 수급권자에게는 급여가 필수 생계비까지만 제한되어야 한다.

부양 받을 권리가 있는 가족이나 한 세대 내에 거주하는 기타 다른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 제한을 같이 당하는 것이 가능한 한 방지되어야 한다.

- (2) 급여 수급권자나 그 대리인이 일부러 또는 대단히 경솔해서, 틀리거나 불완전한 보고를 하거나 의무에 위배되는 태만(방치)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사회부조 급여의 상환 청구이거나 제103조와 제104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인 경우에는, 급여 수급권자를 상대로 한 사회부조 기관의 청구에 따라 급여가 필수 생계비까지로 차감 계산 될 수 있다. 청구로 인한 차감계산 가능성은 3년 상으로 제한 된다 : 상환이나 비용배상에 대한 사회부조 기관의 새로운 청구는 새롭게 차감계산 될 수 있다.
- (3) 사회급여의 선행하는 급여를 통해 급여 수급권자에게 이미 충당되어진 필요에 대한 급여가 인수될 때에도 (2)에 따른 차감계산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4) 보전에 기여하는 급여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차감계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3장 생계비부조

제27조 필수 생계비

- (1) 필수 생계비는 무엇보다 음식, 주거, 의복, 신체위생, 가재도구, 난방과 일상생활의 개인적 필요를 포괄한다. 일상생활의 개인적 필요에는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위 환경(사람)과의 관계와 문화생활 참여도 포함된다.
- (2)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필수 생계비가 또한 특수한, 무엇보다 그들의 발전과 성장으로 인한 필요를 포괄한다.
- (3) 생계비 부조는 또한 필수 생계비에는 충분한 수입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적절한 비용 분담금이 급여 수급권자에게 요구될 수 있다.

제28조 규정필요(최소필요), 규정액(최저생계비)의 내용

- (1) 주거와 난방 및 제30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특수 필요에 대한 급여를 제외하고 시설 이외에서의 필수 생계비의 전체 필요는 규정액(최저생계비)에 따라 지급된다. 특수한 경우에 필요가 다른 데서 전부 또는 일부 충당되거나 불가피하게 그 필요 금액이 평균필요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때에는 필요가 위와 다르게 확정된다.
- (2) 주 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최초로 2005년 1월1일 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년 7월1일 자로 제40조에 따른 법규명령의 범주 내에서 월 규정액(월 최저생계비)의 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정부는 사회부조기관에 법규명령에 확정된 최소 규정액을 기초로 해서 지역의 규정액을 규정할 권한을 준다.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주에서는 세대주에 대한 규정액(기준 규정액)이 2010년도 확정 때까지 다른 주들의 평균 기준 규정액 보다 14유로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정될 수 있다.
- (3) 규정액은 이를 통해 (1)에 따른 필요가 충당될 수 있는 정도로 책정된다. 규정액 책정은 순수입, 소비자 동향과 생활비의 상태와 추이를 고려한다. 기본토대는 하위 소득계층의 가계에서의 실제의, 통계 조사 된 소비지출이다. 데이터의 기본토대는 수입 및 소비 무작위추출조사이다. 새로운 수입 및 소비 무작위 추출조사의 결과가 제시되면, 책정은 검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발된다.
- (4) 규정액 책정은 세 자녀를 둔 부부인 가구의 경우에서 제29조와 제31조에 따른 급여의 평균액과 함께, 지분에 따른 1회 적 지불을 포함한 하위 임금계층에서 받는 월 평균 순 임금 중 제82조(3)에 따른 평균적 세액공제 금액의 고려하에 자녀 수당과 주거수당을 가산해서, 풀 타임으로 종사하는 1인만 버는 상응하는 가구에서 규정액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 (5) 다른 가정이나 본인의 부모나 한쪽부모가 아닌 사람 집에 거주하는 자는 통상 그 비용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필수 생계비가 규정액과 달리 실제 주거비용 금액으로 책정된다.

제29조 주거와 난방

- (1) 주거를 위한 급여는 실제 지출 금액이 지급된다. 주거 지출이 개 경우의 특수성에 적절한 규모를 초과한다면, 제19조(1)항에 따라 그 수입과 자산이 고려되어지는 사람의 필요로써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자가 거처를 바꾸거나 세를 주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요구될 수 없는 동안은- 그러나 통상 길어야 6개월 간 둘째 문장이 적용된다. 새로운 주거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사회부조 기관에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에 따른 중요한 상황에 대해 알려야 한다. 새로운 주거비용이 부적절하게 높은 경우, 적정범위를 초과한 비용을 사회부조 기관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사회부조 기관은 적절한 비용만 인수할 의무가 있다. 급여 수급권자의 목적에 상응하는 사용이 의심될 때에는 주거 급여가 임대인이나 기타 다른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이에 대해 급여 수급권자는 서면으로 통보 받는다. 거처마련 비용, 임대 보증금과 이사 비용은 사전에 승인된 경우에 인수될 수 있다. 이사가 사회부조 기관에 의해 초래되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꼭 필요하거나, 승인 없이는 적절한 공간에서의 거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이 되어야 한다.
- (2) 사회부조 기관은 그 구역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주거급여를 월 총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 지역의 주택시장에 적절한 빈 주거공간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고, 개 경우에 있어 일괄화가 부당한 것이 아닌 때에. 총액 책정 시에는 지역의 주택시장의 실제상태, 임대료 현황 일람표 및 급여 수급권자의 가족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1)의 둘째 문장이 상응해서 유효하다.
- (3) 난방급여는 실제 금액만큼- 적정한 한 지급된다. 급여는 또한 월 총액으로 지불될 수 있다. 총액 책정 시에는 개인적 상황과 가족관계, 거처의 크기와 상태, 난방 방법과 지역의 상태(여건)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30조 추가 필요

- (1) 1. 만 65세 이상인 자나
 2. 만 65세 미만이고 제6집에 따른 완전 생계능력 감소된 자, 이들 중 제9집의 제69조 (5)항에 따른 G표시된 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정해진 규정액의 17%인 추가필요 - 개 경우에 이를 벗어나는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가 인정된다.
- (2) 임신 12주가 지난 임산부에게는 정해진 규정액의 17%인 추가 필요- 개 경우에 이를 벗어나는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가 인정된다.
- (3) 한 명의 또는 여러 명의 미성년 어린이와 함께 살고 혼자서 이들의 양육을 맡고 있는 자는 다음의 추가 필요- 이를 벗어나는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가 인정 된다 :
 1. 7세 미만 어린이 1인이나 16세 미만인 어린이 2인이나 3인에 대해서는 기본 규정액의 36%
 2. 1번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각 어린이 당 기본 규정액의 12%, 그러나 최고 60%까지
- (4) 만 15세 이상이고 제54조(1)의 첫째 문장 1번 내지 3번에 따른 편입부조가 지급되는 장애인에게는 정해진 규정액의 35%인 추가필요- 개 경우에 이를 벗어나는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가 인정된다. 첫째 문장은 또한 적절한 과도기간- 특히 숙련(실습) 기간 동안 제54조(1)의 첫째 문장 1번 내지 3번에 언급된 급여의 종료 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에 비해 (1)의 2번은 적용되지 않는다.
- (5) 비용이 많이 드는 식이가 필요한 환자, 회복기 환자, 장애인 또는 질병이나 장애위험이 있는 자에게는 적절한 추가필요가 인정된다.
- (6) 전체 인정되어지는 추가필요의 합계가 정해진 규정액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1회적 필요

- (1) 1. 가재도구를 포함한 주택의 처음 설비
 2. 임신과 출산 시를 포함한 의복의 처음 장만
 3. 학교법 규정에 따른 여러 날에 걸친 수학여행

이러한 급여들은 별도로 지급된다.

- (2) 급여 수급권자가 규정액 급여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 필요를 자력과 본인의 자금으로 완전히는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도 (1)에 따른 급여가 제공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 결정된 달의 경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번 수입이 고려될 수 있다.
- (3) (1)의 1번과 2번에 따른 급여가 일괄 금액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일괄 금액 책정 시에는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적합한 보고와 현실감 있는 실험계수가 고려되어진다.

제32조 의료보험과 요양보험 보험료

- (1) 제5집의 제9조 (1)의 1번 상이나 농부의료보험 2차법의 제6조(1)의 1번 상의 재 피보험자 및 제5집의 제189조에 따라 질병금고의 가입자로 간주되는 연금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19조(1)의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의료보험 보험료가 인수된다. 제82조(2)의 2번과 3번은 이점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 (2) 그 외의 경우에는 임의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인수될 수 있다 ; 단, 보험료가 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생계비 부조가 단기간 동안만 지급될 예정인 경우에는, 임의 의료보험의 유지를 위해 그 보험료가 인수된다. 제82조 (2)의 2번과 3번은 이 점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 (3) (1)과 (2)에 따라 의료보험 보험료가 인수되는 한, 또한 그와 연관된 요양보험 보험료도 인수된다.

제33조 대책마련 분담금

적절한 노령보험이나 장례보험에 대한 청구권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인수될 수 있다.

제34조 특수한 경우에서의 생계비 부조

- (1) 주거안정을 위해서나 그와 대등한 곤궁상태의 제거를 위해 정당한 경우에만 부채가 인수 될 수 있다. 부채는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인수가 안 되면 무주택이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수되어야 한다. 현금 급여는 보조금이나 대부로 제공될 수 있다.
- (2) 민법 전 제569조(3)과 결부된 제543조(1)의 둘째 문장 1번에 따른 임대관계 해약의 경우에 퇴거요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면, 법원은 관할 지역의 사회부조 기관이나 그곳에서 위임한 부서에 (1)에 규정된 임무수행을 위해 다음사항을 즉시 보고 한다.
 1. 소송이 들어온 날짜
 2.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3. 매월 지불되어야 하는 임대료 액수
 4. 주장된 임대료 체불분 및 손해배상 액수
 5. 구두심리 일자(이미 정해진 경우에)

그 밖에 심리일이 알려질 수 있다. 고소장의 내용에 따른 임대료 미지불이 세입자의 지불 능력에 근거한 것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는, 전달이 행해지지 않는다. 전달된 데이터는 연방원호법에 따른 전쟁희생자 구호의 해당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제35조 시설 내에서의 필수생계비

- (1) 시설에서의 필수생계비는 시설에서 제공된 필요한 생계비 및 입원식 시설에서 추가로 기타 필요한 생계비를 포괄한다. 시설에서의 필수생계비는 제42조 첫째 문장 1번 내지 3번에 따른 기초보장의 급여 규모에 상응한다.
- (2) 기타 필요한 생계비는 특히 인력 조달을 위한 적절한 현금과 의복을 포괄 한다 ; 제 31조(2)의 둘째 문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 18세 이상인 급여 수급권자는 기본 규정액의 최소 26%인 현금을 받는다. 만 18세 미만인 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그들의 관할 구역 내 시설에 대한 관할 주 관청이나 관청에서 지정한 부서가 현금액수를 확정한다. 현금이 급여 수급권자를 통해서나 위해서 규정에 맞게 쓰이는 것이 가능하

지 않다면 현금은 줄어든다.

- (3) 사회부조 기관은 (2)의 둘째 문장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이들이 부담한도(제5집 제62조)까지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 분을 추가 대부(제37조) 형식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인수한다. 매 연도 당 지불되어야 하는 본인 부담분이 관할 질병금고에 1월1일자로 또는 입원식 시설에 들어갈 때 지급된다. 사회부조 기관은 늦어도 전년도 11월1일까지 관할 질병금고에 (2)의 둘째 문장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 이번 연도나 전년도 동안 첫째 문장에 따른 대부 지급에 반대하지 않는 한 보고한다.
- (4) (3)의 셋째 문장의 경우에 질병금고는 사회부조 기관을 통해 제5집 제62조(1)의 첫째 문장에 언급된 증서를 매년 1월1일까지 또는 입원식 시설에 들어갈 때 발급하고, 급여 수급권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분의 금액을 사회부조 기관에 보고 한다 ; 연중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 (5) 2005년 1월1일자로 질병금고는 제5집 제62조(1)의 첫째 문장에 언급된 증서를 (4)와 달리 (2)의 둘째 문장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게 직접 발급 한다 ; 사회부조 기관은 관할 질병금고에 해당 급여 수급권자를 늦어도 2005년 1월1일까지 보고한다.

제36조 필요 충족의 추측

사회부조를 청구하는 사람(청원인)이 거처나 상응하는 기타 다른 숙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면, 이들이 공동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가정공동체), 청원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계비 급여를 받는다고- 이들의 수입과 자산에 따라 그렇다고 여겨질 수 있는 한 추측된다. 공동으로 가계를 꾸려나가지 않거나 청원인이 가정공동체 일원으로써 충분한 생계비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청원인에게 생계비부조가 지급된다. 다음의 청원인에게는 첫째 문장이 유효하지 않다 :

1. 임신해서 또는 만 6세 미만인 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부모나 한쪽부모와 함께 사는 자 또는
2. 제53조 상의 장애인이거나 제61조 상의 요양(수발) 필요자이고 첫 번째 문장에 언급된 자로부터 보호 받는 자 : 이는 또한 언급된 전제조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본

질적으로 도움과 부양을 보장할 목적으로 공동 거주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제37조 보완하는 대부(추가 대부)

- (1) 개별 경우에 있어 규정액에 포함되고,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촉구된 필요가 어떤 방법으로도 충당될 수 없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급여가 신청에 의해 대부 형식으로 제공된다.
- (2) 생계비 부조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부 상환이 월 분할금으로(월부로) 기본규정액의 5%까지의 액수만큼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다. 제 35 조 (3)에 따른 대부는 매 연도 동안에 걸쳐 동일한 분할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진다.

제 38 조 일시적 곤궁상황인 경우에서의 대부

- (1)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급여와 제35조(2)에 따른 현금이 단 기간 동안만 지급될 예정이라면, 현금급여가 대부로 지급될 수 있다. 제19조(1)항 둘째 문장 상의 가정공동체의 일원들에 대한 대부는 일원이 각각 또는 여럿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 (2) 제105조(2)의 규정에 상응해서 적용된다.

제39조 급여 제한

- (1) 급여 수급권자가 그의 의무에 반해 취업이나 필요한 준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정해진 규정액이 첫 번째 단계에서 최고 25%만큼 감소되고 재 거부 시에는 각 단계마다 최고 25%만큼씩 줄어든다. 급여 수급권자는 사전에 그에 대해 안내 받아야 한다.
- (2) 제26조(1)의 둘째 문장이 적용된다.

제40조 명령권한

연방 보건복지부는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노동부와 합의해서 연방 참의원(상원에 해당)이 동의한 법규명령을 통해 제28조에 따른 규정액의 내용, 책정, 구성에 관한 규정 및 수정추진을 공포한다.

제4장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

제1절 기본 원칙

제41조 급여 수급권자

- (1) 노령과 지속적 생계능력 감소 시 생계비 보장을 위해 국내에 통상 체류하고
 1. 만 65세 이상이거나
 2. 만 18세 이상이고 노동시장상황에 상관없이 제6집의 제43조(2)에서 뜻하는 전적인 생계능력 감소이며 전적인 생계능력 감소의 제거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에 의해 본 장에 따른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 (2) (1)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비를 제82조 내지 제84조와 제90조에 따른 본인의 수입과 자산으로 마련할 수 없는 한, 급여청구권이 있다.
- (3)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곤궁을 고의로 또는 대단히 경솔하게 초래했던 사람은 본 장에 따른 급여 청구권이 없다.

제42조 급여 규모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의 급여는 다음을 포괄 한다 :

1. 급여 수급권자에게 정해진 제28조에 따른 규정액
2. 제29조에 상응하는 주거와 난방에 대한 적절한 실제 비용, 입원식 또는 부분 입원식 시설에서의 급여인 경우에는 제98조에 따른 관할 사회부조 기관의 구역 내 1인 가구의 난방비가 포함된 집세의 적절한 평균 실제 비용 금액이 주거와 난방 비용의

근거가 된다.

3. 제30조에 상응하는 추가필요 및 제31조에 상응하는 1회성 필요
4. 제32조에 상응하는 의료보험과 요양보험 보험료의 인수
5. 제34조에 따른 특수한 경우에서의 생계비 부조

급여 수급권자의 해당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첫째 문장에 따른 급여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37조에 상응하는 추가 대부가 기타 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

제43조 재산 사용(투입)과 생계비 청구 시 특수성

- (1) 별거하지 않는 배우자나 반려자(동거인) 및 부부관계와 유사한 공동체의 상대방의 수입과 자산이 본 법령집에 따른 필수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수입과 자산이 제19조와 제20조 첫째 문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 제36조의 첫째 문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급여 수급권자의 자녀나 부모의 제4집 제16조 상의 연간 총수입이 10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녀나 부모에 대한 수급권자의 생계비 청구권이 없다. 첫째 문장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거기 언급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추측된다. 둘째 문장에 따른 추측의 반박을 위해 관할 사회부조 기관은 급여 수급권자에게 첫째 문장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수입 관계에 대한 역추론을 허락한다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 경우에 첫째 문장에 언급된 수입한도 초과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면, 급여 수급권자의 자녀나 부모는- 본 법령집의 시행이 이를 요구하는 한 그들의 수입관계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고 의무는 사회부조 기관의 요구로 증거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에 동의할 의무를 포괄한다. 급여 수급권자는 둘째 문장에 따라 통용되는 넷째와 다섯째 문장에 따른 추측이 반증된다면, 필요에 따른 기초보장의 급여 청구권이 없다.

제2절 절차규정

제44조 특수한 절차규정

- (1) 급여는 통상 12개월 동안 승인된다. 첫 번째 승인이나 급여의 변경 시에는, 신청 제기 되거나 변경 전제조건이 발생하고 보고된 달의 1일로 승인 기간이 개시된다. 변경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승인기간은 그 다음달의 1일로 개시된다.
- (2) 제12조에 따른 급여협약이 개 경우에 행해질 수 있다.

제45조 지속적이고 전적인 생계능력 감소의 확인

- (1) 급여 수급권자의 보고와 증명을 근거로 해서 생계비를 완전히 충당하기에는 고려 대상이 되는 수입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 관할 사회부조 기관은 제6집 제109a조(2)에 따른 관할 연금보험 기관에 제41조 (1)의 2번의 의학적 전제조건을 심사하도록 의뢰한다. 연금보험 기관의 결정은 의뢰한 사회부조 기관에 구속력이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의뢰가 행해지지 않는다 :
 1. 연금보험 기관이 생계능력 감소로 인한 연금신청과 관련해서 제41조 (1)의 2번의 전제조건을 이미 확인한 경우
 2. 장애인 작업소의 전문위원회가 작업소나 시설에 들어오는 데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작업소 규정 제2조와 제3조), 급여 수급권자가 제6집의 제43조(2)의 셋째 문장1번에 따른 법률에 의거해서 완전히 생계능력 감소된 자로 간주되는 경우 독일 연금보험 기관 연합회와 지방의 최고연합회들은 절차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 (3) 사회부조 기관은 (1)에 따른 의뢰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제6집 제109a조 (2)에 따른 경비와 비용을 연금보험 기관에 상환한다. 독일 연금보험기관 연합회와 지방의 최고연합회들은 일괄금액의 지불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제13장 제2절에 따른 비용상환은 행해지지 않는다.

제46조 연금보험 기관과의 협력

관할 연금보험 기관은 연금 수급권이 있는 제41조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게 본 장에 따른 급여 전제조건과 절차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은 문의 시에 정보와 조언이 제공된다. 연금이 제6집 제68조와 제255c조에 따른 최신 연금가치의 27배인 금액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에 추가로 신청 서식이 첨부된다. 연금보험 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월 연금 액수와 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있음에 관한 보고와 함께 관할 사회부조 기관에 송부한다. 지급연금금액 및 연금 절차에서 조사되는 기타 수입으로 인해 본 장에 따른 급여 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첫째 문장에 따른 연금보험기관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5장 의료부조

제47조 예방적 의료부조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의학적 예방급여와 검사가 제공된다. 기타 다른 급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이나 그 외 건강 손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을 때에만 제공된다.

제48조 질병 시 부조

질병을 발견, 치료하고 그 악화를 예방하거나 질병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5집의 제3장 제5절 제1호(Titel)에 상응하는 질병치료 급여가 제공된다. 제5집의 제264조에 따른 질병치료 규정이 첫째 문장에 따른 질병 시 부조 급여보다 우선한다.

제49조 가족계획을 위한 부조

가족계획을 위해 의사와의 상담, 필요한 검사, 임신조절 제제의 처방이 주어진다.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는 피임제제의 비용이 인수된다.

제50조 임신과 해산 시 급여

임신과 해산 시에는

1. 조산원 원조 및 의사의 진료와 보호
2. 의약품, 봉대제제와 치료제 공급
3. 입원 시설에서의 요양
4. 제65조(1)에 따른 자택 요양 급여가 주어진다.

제51조 불임시술 시 부조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한 불임시술 시에는 의사의 검진, 자문, 소견, 진료, 의약품, 봉대제제, 치료제 공급 및 병원요양이 주어진다.

제52조 급여 제공, 사례금

- (1) 제47조 내지 제51조에 따른 부조는 공적 의료보험의 급여에 상응한다. 질병금고가 그 정관에서 급여의 규모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한, 사회부조 기관은 의무에 상응하는 평가(재량)에 따라 부조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
- (2) 급여 수급권자는 공적 의료보험 규정에 상응해서 의사와 치과의사 및 병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부조는 제5집의 제65a조의 적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규모로만 제공된다.
- (3) 제47조 내지 제51조에 따른 급여 제공 시, 공적 질병금고에 대해 제5집의 제3장에 따라 유효한 규정- 제2절의 제3호를 제외한 이 적용된다. 제5집의 제28조(3)의 첫째 문장 상의 심리치료사, 의사, 치과의사는 그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그들이 개업한 곳의 지역 질병금고가 그 가입자들을 위해 지불하는 사례(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의료행위 제공자에 대해 제5집의 제294조, 제295조, 제300조 내지 제302조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사회부조 기관과 본 장에 따른 급여의 결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5집의 제303조(1) 및 제304조에 따른 합의는 사회부조 기관에 대해서도 상응해서 유효하다.

- (4)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급여 수급권자는 제5집의 제39a조 첫째 문장의 전제 조건 하에 호스피스(Hospiz)에서의 입원식과 부분 입원식 요양을 위해 제5집 제39a조 셋째 문장에 상응해서 공적 질병금고에서 지불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 (5) 제54조(1)의 첫째 문장에 따른 의학적 재활 급여에 대해서 (2)와 (3)이 상응해서 적용된다.

제6장 장애인의 편입부조

제53조 급여 수급권자와 과제

- (1) 제9집의 제2조(1)의 첫째 문장 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에 있어 현저하게 제한이 있거나 그러한 현저한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개 경우의 특수성, 무엇보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편입부조의 과제가 완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편입부조 급여를 받는다. 기타 다른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편입부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2) 전문적 지식에 따라 장애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은 장애 위험이 있는 자이다. 이는 또한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예방적 의료부조와 질병 시 부조가 필요한 사람이 이러한 급여의 시행 시에도 장애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 (3) 편입부조의 특수한 과제는 임박한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나 그 후유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고 장애인을 사회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장애인을 사회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장애인의 공동체 생활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고 적절한 직업의 수행이나 그 외 적절한 활동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가능한 한 간병에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 (4) 본 법령집과 본 법령집에 근거해서 공포되는 법규명령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참여를 위한 급여에는 제9집의 규정들이 유효하다. 참여를 위한 급여에 대한 관할과 전제조건(자격)은 본 법령집에 따른다.

제54조 편입부조 급여

- (1) 편입부조 급여는 제9집 제26조, 제33조, 제41조, 제55조에 따른 급여 외에 특히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학교교육 - 특히 일반적인 의무교육의 범주 내에서 을 위한 부조, 의무교육 이상의 상급학교 진학(이를 위한 준비도 포함)을 위한 부조; 일반적인 의무교육의 범주 내에서의 학교교육의 실현에 관한 규정은 침해되지 않는다.
 2. 대학 진학을 포함해서 적절한 직업을 위한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위한 부조
 3. 기타 적절한 활동을 위한 훈련을 위한 부조
 4. 제56조에 따른 대등한 그 외 작업소에서의 부조
 5. 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가 처방한 의료행위의 효과 보장과 장애인의 노동생활 참여 보장을 위한 추후의 부조 의학적 재활과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는 각각 공적 의료보험과 연방 노동중개소의 재활 급여에 상응한다.
- (2) 입원식 시설에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자가 편입부조급여를 받으면, 경우에 필요한 한, 그들 또는 그 가족에게 서로 간의 방문을 위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제55조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

완전 입원식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편입부조 급여가 제11집의 제43a조 상의 장애인 부조에 제공되면, 급여는 또한 시설에서의 요양급여도 포괄한다. 장애인의 요양이 시설 내에서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장애인이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시설의 재단이 확인하면, 사회부조 기관과 관할 요양금고는 시설의 재단과 더불어 급여가 다른 시설에서 제공되도록 합의 한다 ; 이때 장애인의 적절한 바램이 참작되어야 한다.

제56조 그 외 작업소에서의 부조

제9집의 제41조에 따른 승인된 장애인 작업소와 대등한 그 외 작업소에서의 부조가 제

공될 수 있다.

제57조 담당기관에 따른 개인적 예산

제53조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는 신청을 통해 편입부조 급여를 또한 기관에 따른 개인적 예산의 일부로 받을 수 있다. 제9집의 제159조 및 예산규정과 관련된 제9집의 제17조(2)내지 (4)가 이점에 있어서 적용된다.

제58조 전반적 계획

- (1) 사회부조 기관은 가능한 한 조기에 각 급여의 실행을 위한 전반적 계획을 작성한다.
- (2) 사회부조 기관은 전반적 계획을 작성하고 급여를 시행할 때, 장애인과 그 외 관계자 특히 진료하는 의사, 보건 위생국, 주 의사, 청소년 국, 연방 노동중개소의 업무부서 (관청)와 협력한다.

제59조 보건 위생국의 과제

보건 위생국 또는 주법을 통해 정해진 부서는 아래의 과제가 있다 :

1. 장애인 또는 인적 보호권이 있는 자에게 진료의사와 합의해서 편입부조의 급여와 치료조치 시행 동안과 그 이후에도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알맞은 편입부조의 의료급여와 그 외 급여에 대해 자문 한다 ; 자문은 장애인이나 인적 보호권이 있는 자의 동의로 편입부조 급여시행에 관련된 부서나 사람과 합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장애인이 이미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다면, 보건 위생국은 진료하는 의사와 연락한다. 자문 시에는 당국의 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자문을 위해 주 의사와 합의하여 필요한 민원처리 요일이 안내된다.
2. 장애인이나 인적 보호권이 있는 자의 동의로 제9집의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공동의 서비스 부서와 함께 재활 필요를 밝히고 편입부조 급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정한다.

3. 서류를 평가하고 서류를 필요한 시설의 계획 수립과 그 외 학문적 평가를 위해 주에 있는 관할 최고관청의 세부규정에 따라 전달한다. 서류의 전달 시에는 장애인과 인적 보호권이 있는 자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는다.

제60조 명령권한

연방 정부는 연방 참의원이 동의한 법규명령을 통해 급여권이 있는 장애인의 인적 범위의 분류, 편입부조 급여의 종류와 규모 및 편입부조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시행하는 다른 부서와의 협력에 관해 공포할 수 있다.

제7장 요양(수발) 부조

제61조 급여 수급권자와 급여

- (1)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통상적이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 용무를 위해 오랫동안, 예정상 최소 6개월 간, 상당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요양부조를 받게 된다. 요양급여는 또한 예정상 6개월 미만 동안 요양(수발)이 필요하거나 첫째 문장에 따른 것보다 필요가 더 적거나 (5)에 따른 것과 다른 용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장애인에게도 지급 된다 ; 입원식 또는 부분 입원식 시설을 위한 급여에 대해서는 개 경우의 특수성에 따라 그것이 필요한 때에만, 특히 외래나 부분 입원식 급여가 요구될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때에만 위의 내용이 적용된다.
- (2) 요양부조는 재택 요양, 보조제, 부분 입원식 요양, 단기요양, 입원식 요양을 포괄한다. 첫째 문장에 따른 급여의 내용은 제11집의 제28조(1)의 1번과 5번 내지 8번에 기재된 급여를 위한 요양보험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집의 제28조(4)가 상응해서 유효하다. 요양부조는 신청에 의해서 또한 기관에 따른 개인적 예산의 일부로 지급될 수 있다. 제9집의 제159조 및 예산규정과 관련된 제9집의 제17조(2)내지 (4)가 이점에 있어서 적용된다.
- (3) (1)에서 의미하는 질병과 장애는 다음과 같다.

1. 지지골격과 운동기관의 손상(손실), 마비 또는 기타 다른 기능장애
2. 내장 또는 감각기관의 기능장애
3. 원동력 장애, 기억력 장애 또는 방향감각 장애와 같은 중추신경계 장애 및 내인성 정신장애, 노이로제나 정신적 장애
4. 그 후유증으로 (1)에서 뜻하는 요양(수발)을 필요로 하게하는 기타 다른 질병 또는 장애
- (4) (1)의 필요는 일상생활 용무의 보조, 부분적 또는 전적인 인수나 이러한 용무의 자립적 이행을 목표로 한 감독 또는 지도에 있다.
- (5) (1)에서 의미하는 통상적이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 용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체위생 분야에서는 세수, 샤워, 목욕, 양치질, 빗질, 면도, 대소변
 2. 식이 분야에서는 입에 맞는 크기의 조리 또는 음식섭취
 3. 활동성 분야에서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잠자리에 들고 옷을 입고 벗기, 걷기, 서기, 계단 오르거나 거처를 나선 후 다시 찾아오기
 4. 가사 돌보기 분야에서는 장보기, 요리, 청소, 설거지, 세탁, 난방
- (6) 제11집의 제16조에 따른 명령, 제11집의 제17조에 따른 요양금고의 지침, 제11집의 제30조에 따른 명령, 제11집의 제75조에 따른 요양제공에 관한 총괄계약 및 연방권고와 제11집 제80조에 따른 질 보장에 관한 합의는 요양필요성의 개념, 요양급여의 내용, 주거와 음식의 세부규정을 위해서 그리고 제64조에 따른 요양수당의 분류, 금액, 조정을 위해서 상응해서 적용된다.

제62조 요양금고의 결정에 구속

제11집에 따른 요양필요성의 정도에 대한 요양금고의 결정은 또한 요양부조와 연관된 결정에서도 근본토대가 된다 - 요양금고의 결정이 양쪽의 결정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한-

제63조 자택 요양

제61조(1)의 경우에 재택 요양으로 충분하다면, 사회복지조 기관은 가사 돌보기를 포함한 요양(수발)이 요양 필요자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나 이웃의 도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제64조 내지 제66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입원식 또는 부분 입원식 시설에서는 요양 필요자가 재택 요양급여를 못 받는다.

제64조 요양수당

- (1) 신체위생, 식이, 활동성에 있어서 한 분야 또는 여러 분야의 용무 중 최소한 두 가지 용무를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번 도움이 필요하고 가사를 돌보는데 주중에 여러 번 도움이 필요한 요양 필요자(현저한 요양 필요자)는 제11집의 제37조(1)의 셋째 문장 1번에 따른 금액의 요양수당을 받는다.
- (2) 신체위생, 식이, 활동성에 있어서 여러 용무를 위해 적어도 하루에 세 번 여러 시간대에 도움이 필요하고 가사를 돌보는데 주 중에 여러 번 도움이 필요한 요양필요자(중증 요양필요자)는 제11집의 제37조(1)의 셋째 문장 2번에 따른 금액의 요양수당을 받는다.
- (3) 신체위생, 식이, 활동성에 있어 여러 용무를 위해 매일 24시간 내내 밤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가사를 돌보는데 주 중에 여러 번 도움이 필요한 요양필요자(최 중증 요양필요자)는 제11집의 제37조(1)의 셋째 문장 3번에 따른 금액의 요양수당을 받는다.
- (4) 요양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장애로 말미암아 또래의 건강한 아동에 비해 추가되는 요양필요가 정해진다.
- (5) 요양수당 청구권은 요양 필요자와 요양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요양수당을 가지고 그에 맞게 필요한 요양(수발)을 적절한 방식으로 스스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청구권이 달력 월의 전부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금액이 상응해서 감소된다. 감소 시에는 달력 월이 30일로 책정된다. 요양필요자가 사망한 달의 말까지 요양수당은 지급된다. 요양금고가 제11집의 제37조(6)에 따른 해당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면, (1)내지 (4)에 따른 급여의무가 없다.

제65조 기타 다른 급여

- (1) 제61조(1)에서 의미하는 요양 필요자에게는 적절한 간병인 비용이 상환된다; 또한 적절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고 간병인의 적절한 노후보장에 대한 분담금(보험료)이 인수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63조 첫째 문장의 요양(수발) 외에 또는 대신에 특수한 간병인력의 동원이 필요하거나 간병인을 위한 상담 또는 일시적인 부담 경감(휴식)이 요구된다면, 적절한 비용이 인수된다.
- (2) 제64조에 따른 요양수당을 받는 요양 필요자에게는 추가로 간병인이나 특수 간병인력의 적절한 노후보장에 대한 분담금(보험료)을 위한 비용이 상환된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66조 급여 경합

- (1) 요양필요자가 다른 법규에 따라 제64조와 제65조(2)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한, 제64조와 제65조(2)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72조에 따른 급여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급여의 70%, 제11집에 따른 요양수당은 그 지급 금액만큼 요양수당 계산에 포함된다.
- (2) 제65조에 따른 급여는 제64조에 따른 급여에 추가로 지급된다. 제65조(1)에 따른 급여나 다른 법규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급여가 지급된다면, 요양수당이 최고 2/3만큼 감소될 수 있다.
- (3) 요양필요자가 부분 입원식 보살핌을 받거나 본 법령집에 따르지 않는 그와 대등한 조치가 행해진다면, 제64조에 따른 요양수당이 적절하게 감소될 수 있다.
- (4) 요양필요자가 다른 법규에 따라 목적에 상응하는 급여를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제65조(1)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요양필요자가 자신이 고용한 특수 요양인력을 통해 요양(수발)을 받는 경우에, 이들의 제11집에 따른 현물급여 청구가 금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1집에 따라 지급된 요양수당이 제65조(1)에 따른 급여계산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제8장 특수한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부조

제67조 급여 수급권자

사회적 어려움과 결합된 특수한 생활환경에 처한 사람은 이를 자력으로 극복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급여를 지급 받는다. 그 필요가 본 법령집이나 제8집의 다른 규정에 따른 급여를 통해 충당되는 한, 이러한 급여가 첫째 문장에 따른 급여보다 우선한다.

제68조 급여 규모

- (1) 급여는 어려움을 예방, 제거, 완화하거나 그 악화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특히 급여 수급권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과 개인적 보살핌, 직업교육을 위한 원조, 일자리의 획득과 보장 및 거처의 유지와 마련 시 조치를 포괄한다.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경우에는 전반적(종합) 계획이 작성된다.
- (2) 개 경우에 서비스 급여가 필요한 한, 급여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급된다. 제19조(3)에 언급된 자의 수입과 자산이 고려되지 않고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청구에서 제외 된다 이로 인해 부조의 성과가 위협 받을 수 있는 한-
- (3) 사회부조 기관은 동일한 과제를 목표로 하는 협회와 기타 다른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이러한 협회 및 부서의 활동과 사회부조가 상호 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9조 명령권한

연방 보건복지부는 연방 참의원이 동의한 법규명령을 통해 제67조에 따른 인적 범위의 분류 및 제68조(1)에 따른 조치의 종류와 규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다.

제9장 기타 다른 생활상태에서의 부조

제70조 가사 계속 이행을 위한 부조

- (1) 고유의 가계가 있는 사람은 가계구성원 중 아무도 가사를 수행할 수 없고 가사의 계속 이행을 요구되는 경우에, 가사 계속 이행을 위한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 급여는 통상 잠정적으로만 지급되어야 한다. 급여를 통해 입원식 시설에서의 거주가 방지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면, 둘째 문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급여는 가계구성원의 개인적 보살핌 및 가사 계속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그 외의 활동을 포괄한다.
- (3) 제65조(1)이 상응해서 적용된다.
- (4) 급여는 또한 가계구성원의 다른 곳에서의 임시 거주 단, 이러한 거주가 특수한 경우에 가사 계속 이행 외에 또는 대신에 요구되는 한-에 대한 적절한 비용도 인수할 수 있다.

제71조 노인 부조

- (1) 노인들에게는 본 법령집의 나머지 규정들에 따른 급여 외에 노인 부조가 지급되어야 한다. 노인 부조는 노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예방, 극복 또는 완화하고 노인들이 공동사회의 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 (2) 노인 부조의 급여에는 특히 다음이 대상이 된다:
 1. 노인이 원하는 경우의 사회활동을 위한 급여
 2. 노인의 필요에 상응하는 거처의 마련과 유지 시 급여
 3. 노인들을 보살피는 시설에 입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적절한 시설에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할 때 상담과 지원
 4. 나이에 알맞은 서비스 이용 문제에서의 상담과 지원
 5. 노인의 사회성, 즐거움, 교육 또는 문화적 필요에 기여하는 행사나 시설의 방문을 위한 급여

6. 노인들이 가까운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

- (3) (1)에 따른 급여는 또한 그것이 노후 준비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한다.
- (4) 노인 부조는 개 경우에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한, 수입이나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72조 맹인 부조

- (1) 맹인에게는 시력상실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정을 위해 이들이 다른 법규에 따른 그와 동일한 종류의 급여를 받지 않는 한 맹인 부조가 지급된다. 제11집에 따른 채택 요양 시 급여가 현물급여라면 요양1등급의 요양수당의 70%, 요양2등급 및 3등급에서는 요양2등급의 요양수당의 50%가,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2)에 따른 금액의 50%가, 맹인 수당계산에 포함된다. 둘째 문장은 민간 요양보험의 제11집에 따른 급여와 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급여에 있어서도 의미상 유효하다. 제39조가 상응해서 적용된다.
- (2) 맹인 부조는 2004년 6월30일까지 18세 이상인 맹인에게는 매월 585유로, 18세 미만인 맹인에게는 매월 293유로이다. 이는 공적 연금보험에서의 최신 연금가치가 변하는 시점에 그 정도 만큼 바뀌게 된다.
- (3) 맹인이 입원식 시설에 거주하고 그 거주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 공법상의 급여기관의 자금으로 부담된다면, (2)에 따른 맹인부조가 이러한 자금으로 부담되는 비용만큼,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2)에 따른 금액의 50%만큼만, 감소된다. 첫째 문장은 시설에 입소한 달의 그 다음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시설에 거주하는 매달 전체에 대해 유효하다. 일시적인 부재가 연속하는 6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설에 부재하는 매 일자에 대해 맹인부조는 (2)에 따른 금액의 1/30이 지급 된다 ; 첫째 문장에 따른 금액이 비례해서 감소된다.
- (4) 맹인 부조에 추가해서 입원식 시설 밖에서의, 시력 상실로 인한 요양부조(제61조와 제63조) 및 현금(제35조(2))이 지급되지 않는다. (1)에 추가해서 제30조(1)의 2번은 맹인이 단지 시력 상실로 인해서만 전적인 생계능력 감소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맹인 부조가 아닌 다른 법규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급

여를 받는 맹인에게도 상응해서 적용된다.

- (5) 양쪽 눈의 전체 시력이 1/50이상이 아니거나 이러한 시력의 정도만큼 주의되는 시력의 지속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맹인과 동등하다.

제73조 그 밖의 다른 생활상태에서의 부조

그 밖의 다른 생활상태에서도, 공공자금의 투입이 정당하다면,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현금급여가 보조금이나 대부로 지급될 수 있다.

제74조 장례비용

장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없는 한, 필요한 장례비용이 인수된다.

제10장 시설들

제75조 시설들과 서비스

- (1) 시설들이라 함은 제13조 상의 입원식과 부분 입원식 시설들이다.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제75조 내지 제80조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2) 사회부조의 과제완수를 위해 사회부조 기관은 자가시설을- 다른 기관의 적합한 시설이 존재하거나 개축 또는 조성될 수 있는 한 신설할 수 없다. (3)에 따른 합의는 특히 제9조(1)의 기본원칙의 보장과 그 수행능력의 고려 하에 급여 제공에 적합한 시설의 재단들과만 체결된다. 동일하게 적합한 시설들이 존재한다면, 사회부조 기관은 대등한 급여내용, 규모, 질에 있어서 그 보수가 다른 재단들보다 많지 않은 재단들과 우선적으로 합의를 체결한다.
- (3) 어떠한 시설의 급여가 제공되면 사회부조 기관은 다음에 관한 합의가 시설의 재단이 나 그 연합회와 체결되어 있을 때에만 급여에 대한 보수의 인수 의무가 있다 ;
 1. 급여의 내용과 규모와 질(급여합의)

2. 일괄액과 각 급여분야에 대한 금액으로 구성된 보수(보수합의)와
3. 급여의 경제성과 질의 심사(심사합의)

합의는 경제성, 절약, 급여능력의 기본원칙에 상응해야 한다. 사회부조 기관은 급여의 경제성과 질을 심사할 수 있다.

- (4) (3)에 언급된 합의중의 하나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부조 기관은 개 경우의 특수성에 따라 요구된 때에만 해당 시설을 통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설의 재단은 제76조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급여제안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이러한 급여제안에 상응해서 급여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보수는 거처가 있는 곳이나 인근 지역의 사회부조 기관이 다른 시설들과 (3)에 따라 체결한 합의에 따라 대등한 급여에 대해 지불하는 만큼의 금액까지만 인수될 수 있다. 급여의 경제성과 질의 심사에 대해서는 대등한 시설과 사회부조 기관 간의 합의 내용이 상응해서 적용된다. 사회부조 기관은 시설에 이러한 심사의 내용과 규모에 관해 알려야 한다. (5)가 상응해서 유효하다.
- (5) 인가된 요양시설(제11집의 제72조 상의)의 경우, 요양원에서의 외래 및 부분 입원식 요양급여와 단기 요양급여, 완전 입원식 요양급여, 숙식에서의 급여, 추가급여의 종류, 내용, 규모, 보수(사례)는 제61조에 따른 광범위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제11집의 제8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집의 제8장에 따른 합의가 사회부조 기관과의 협의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첫째 문장은 유효하지 않다. 사회부조 기관은 별도로 계산된, 제11집의 제82조(4)에 따른 투자비용에 있어서는, 이에 관해 상응하는 합의가 제10장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만 인수 의무가 있다.

제76조 합의 내용

- (1) 급여에 관한 합의는 중요한 급여특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시설에서 보호 받는 인적 범위, 급여의 종류, 목표, 질, 인력(직원)의 자격조건 및 필요한 물적, 인적 장비를 확정해야 한다. 합의에는 시설이 합의된 급여제안의 범주 내에서

급여 수급권자를 받아들이고 보살피는 의무가 담겨야 한다. 급여는 충분하고, 목적에 맞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1)에 따른 급여에 대한 보수는 적어도 숙식에 대한 일괄액(기본총액)과 조치에 대한 일괄액(조치총액) 및 그 장비를 포함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금액(투자금액)으로 구성된다. 공공자금으로부터의 지원이 계산에 포함된다. 조치총액은 급여 수급권자의 그룹에 따라 대등한 필요로 산정된다. 투자조치에 근거해서 사회부조 기관에 요구되는 보수 인상은 사회부조 기관이 사전에 그 조치를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3) 사회부조 기관은 시설의 재단과, 급여의 경제성과 질에 대한 그리고 경제성 심사와 질 심사의 내용과 이행을 위한 절차에 대한 기본 원칙과 척도를 합의한다. 심사 결과가 확정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급여 수급권자에게도 공개된다. 사회부조 기관은 이중 심사를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해 시설 감독행정기관 및 의료보험의 의료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제77조 합의 체결

- (1) 제75조(3)에 따른 합의는 매 재정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의 기간(합의기간)에 대해 체결된다; 추후의 조정은 허가되지 않는다. 한쪽이 서면으로 협상을 요구한 후 6개월 이내에 제76조(2)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의 신청으로 제80조에 따른 중재부서가 의견 일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 지체 없이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회법원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소송은 중재부서가 아니라 양쪽 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대상이 된다. 이의 심리절차에서 결정의 추후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 (2) 합의와 중재부서 결정은 그 안에 규정된 시점으로 효력 발생한다. 시점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체결 일자, 중재부서의 확정은 중재부서에 신청이 들어 온 일자로 효력이 있다. 해당 시점 이전의 소급 효력을 갖는 보수의 합의나 확정은 허가되지 않는다. 합의 기간의 만기 후에는 합의된 또는 확정된 보수가 새로운 보수의 효력발생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 (3) 보수에 대한 합의나 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견적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변화 시에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요구로 현 합의기간에 대해 보수가 새로 협상된다. (1)과 (2)가 상응해서 유효하다.

제78조 비정상적인 해약고지

시설이 급여 수급권자와 그 비용 부담 기관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 상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해서 합의 지속이 무리가 된다면 사회부조 기관은 해약고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제75조(3)에 따른 합의를 해약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제76조(3)에 따른 심사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급여 제공 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시설의 재단이 시설법에 따라 영업허가가 박탈 또는 시설운영이 정지되거나 시설이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비용부담 기관을 상대로 (허위)결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약은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제10집의 제59조가 침해되지 않는다.

제79조 기본계약(총괄계약)

- (1) 지역을 초월한 사회부조 기관과 지방의 최고연합회(주 차원)는 시설의 재단들의 협회(주 차원)와 공동으로 그리고 통일해서 다음에 관해 제75조(3)과 제76조(2)에 따른 합의를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1. 제75조(3)에 따른 보수 일괄액과 금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비용 종류와 비용 구성 요소의 세부 분류 및 제76조(2)에 따른 투자금액의 구성
 2. 조치총액의 산출과 구성에 대한 내용과 기준, 제76조(2)에 따른 대등한 필요를 가진 그룹의 조식을 위한 특징 및 이러한 그룹의 수
 3. 제9집의 제41조에 따른 비용 종류와 비용 구성요소의 소속
 4. 제75조(3)에 따른 경제성 및 질 심사의 내용과 이행절차

공법상의 교회나 종교단체 또는 그 외 공익재단에 속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소속된 교회나 종교단체 또는 사회사업 단체에 의해서도 기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기본계약에서는 제5장 내지 제9장에 따른 각 급여의 특징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2)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의 연방 사업공동체, 지방의 최고연합회들의 연방협회와 시설의 재단들의 협회(연방차원)는 공동으로 그리고 통일해서 (1)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위한 권장안을 합의한다.

제80조 중재 부서

- (1) 각 주마다 또는 한 주의 일부에 대해 관할 정부 행정기관에 중재부서가 조직된다.
- (2) 중재부서는 시설의 재단들의 대표자들과 지역별 그리고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의 대표자들이 동수로 구성되고 1인의 중립의장을 둔다. 시설의 대표자들과 그 대리인은 시설의 재단들의 협회에 의해, 사회부조 기관의 대표자들과 그 대리인은 사회부조 기관에 의해 선임된다. 시설의 대표자들 선임 시에는 시설 재단의 다양성이 유의되어야 한다. 의장과 그 대리인은 관련된 기구에 의해 공동으로 선임된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천으로 결정된다. 관련된 기구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셋째 문장에 따른 절차에서 의장직과 그 대리인직에 대한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면 관할 주 행정기관이 관련된 기구들의 신청에 의해 대표자들을 선임하고 후보자를 지명한다.
- (3) 중재 부서의 구성원들은 명예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시에 매이지 않는다. 각 구성원마다 한 표를 행사한다. 구성원의 다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 다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의 표로 정해진다.

제81조 명령권한

- (1) 주 정부가 서면으로 요구한 후 6개월 이내에 제79조(1)에 따른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대신해 주 정부가 법규명령을 통해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 (2) 주 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제80조에 따른 중재 부서 구성원의 수, 선임, 임기, 직무 수행, 현금지출의 상환, 시간소요에 대한 배상, 법 집행 감독, 업무집행, 절차, 요금의 징수와 금액 및 비용의 배분에 대해 규정할 권한이 있다.

제11장 수입과 재산의 사용(투입)

제1절 수입(소득)

제82조 수입의 정의

- (1) 수입에는 금전이나 금전가치가 있는 모든 소득- 본 법령집에 따른 급여, 연방원호법과 연방원호법의 상응하는 적용을 규정한 법률에 따른 기초연금과 생명 및 신체 또는 건강의 손상에 대한 연방 배상법에 따른 연금이나 보조금(연방원호법의 대등한 기초연금 액수만큼)을 제외한 이 포함된다.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자녀수당이 아동의 필요한 생계비 충당에 필요한 한, 자녀수당이 각 자녀에게 수입으로 가산된다.
- (2) 수입에서 다음이 공제 된다 ;
 1. 수입상에 납부된 세금
 2. 노동후원 분담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의무보험료
 3. 법적으로 규정되거나 사유와 액수에 따라 적절한 경우의 공적 또는 민간 보험의 보험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의 회비 및 소득세 법 제82조에 따른 지원된 노후대책 분담금- 소득세법의 제86조에 따른 최소 자가 부담을 초과하지 않는 한
 4. 수입획득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출
 5. 제9집의 제43조 넷째 문장에서 의미하는 임금의 인상금액과 노동후원 수당
- (3) 생계비부조와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에 있어서는 나아가 급여 수급권자의 자영 및 비자영 활동으로 버는 수입의 30%가 공제된다. 첫째 문장과 달리 장애인 작업소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초 규정액의 1/8에 추가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의 25%가 보수에서 공제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첫째 문장과 다르게 확정된 금액이 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다.
- (4) 부분 입원식이나 입원식 시설에 거주하는 자에게 가정에서의 생계비 지출이 절약되는 한, 제3장에 따른 급여를 위한 자금의 조달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시설 내 요양이 장기간 동안 필요할 것으로 예정되는 사람에게 -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로 부양하지 않는 동안- 적절한 규모로 자금조달을 요구해야 한다 .

제83조 목적과 내용에 따라 규정된 급여

- (1) 공법상의 규정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언급된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는 개 경우에 있어 사회부조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수입으로 고려된다.
- (2) 재산손실이 아닌 손상으로 인해 민법전의 제253조(2)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은 수입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제84조 기부금

- (1) 비영리 사회사업의 기부금은 수입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기부금이 급여 수급권자의 상태에 유리한 영향을 끼쳐서 사회부조가 부당한 것 같다면,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타자가 그에 대한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무 없이 제공하는 기부금은 수입으로 간주 시 급여 수급권자에게 있어 특수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면 수입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제2절 제5장 내지 제9장에 따른 급여를 위한 수입한도

제85조 수입한도

- (1) 제5장 내지 제9장에 따른 부조의 경우에는 필요가 지속되는 동안 청원하는 자 및 그와 함께 사는 배우자나 반려자(동거인)의 총 월수입이 다음에서 나타나는 수입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자금의 조달이 요구될 수 없다 ;
 1. 기본 규정액(Eckregelsatz)을 2배수한 기본금액(Grundbetrag)
 2. 주거비용- 그 비용이 개 경우의 특수성에 적합한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한
 3. 함께 사는 배우자나 반려자 및 이들 또는 청원하는 자가 주로 부양하거나 사회부조 제공 결정에 따라 의무로 부양하는 각 사람에 대한 기본 규정액의 70%를 유로화 단위로 반올림 한 액수의 가족가산금(Familienzuschlag)
- (2) 청원하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혼인 경우에는 필요가 지속되는 동안 청원자 및 그

부모의 총 월수입이 다음에서 나타나는 수입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청원자 및 그 부모에게 자금의 조달이 요구될 수 없다 ;

1. 기본 규정액(Eckregelsatz)을 2배수한 기본금액
 2. 주거비용 그 비용이 개 경우의 특수성에 적합한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한-
 3. 부모가 서로 같이 사는 경우에는 한쪽 부모, 청원하는 자 그리고 부모나 청원자가 주로 부양하거나 사회부조 제공 결정에 따라 의무로 부양하는 각 사람에 대한 기본 규정액의 70%를 유로화 단위로 반올림 한 액수의 가족 자산금. 부모가 서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한도가 청원자와 함께 사는 부모에 따른다. 청원자가 부모 중 아무하고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한도가 (1)에 따라 정해진다.
- (3) 기준이 되는 기본 규정액은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는 장소에 따라 정해진다. 시설에서나 다른 가정에서 또는 제107조에 언급된 다른 사람 집에서 지내는 경우의 급여에서는 기준이 되는 기본 규정액이 급여 수급권자의 통상 체류지에 따르고, (2)의 경우에 있어 그 부모나 한쪽 부모의 수입도 결정력이 있다면 해당 부모의 통상 체류지에 따른다. 통상 체류지가 국내에 있지 않거나, 조사될 수 없다면, 첫째 문장이 적용된다.

제86조 차이가 나는 기본 기여액(Grundbetrag)

연방 주들 그리고 주 법의 규정들이 배치되지 않는 한, 또한 사회부조 기관들은 제5장 내지 제9장에 따른 특정한 부조 종류에 대해 더 고액의 기본금액을 수입한도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87조 수입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의 사용(투입)

- (1) 고려 대상이 되는 수입이 수입한도를 초과한다면, 자금의 조달이 적절한 규모에서 요구된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의 심사에서는 무엇보다 청구인과 그의 부양 받을 권리가 있는 가족의 필요종류, 장애나 요양필요성의 종류나 정도, 필요한 비용의 기간과 금액 및 특별한 부담이 고려되어진다. 제64조(3)에 따른 최 중증 요양 필요자

와 제72조에 따른 맹인의 경우에는 수입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의 최소한 60%의 사용(투입)이 요구될 수 없다.

- (2) 청구인이 필요경우의 발생으로 인해 그 수입을 전부 또는 일부 소실하고 그 필요가 단기간 동안만이라면, 적절한 기간 내에 그 필요가 없어진 후 생기는, 수입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으로부터 자금의 조달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입의 손실 없이 자금의 조달이 요구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그 사용이 최소한 1년 동안으로 정해진 필요한 사물의 마련을 위한 1회성 급여에서는 (1)에 따른 자금의 조달이 또한 제19조(3)에 언급된 사람들이 급여가 결정된 달의 만기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번 수입으로부터도 요구될 수 있다.

제88조 수입한도를 넘지 않는 수입의 사용(투입)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수입한도를 넘지 않는다 해도 자금의 조달이 요구될 수 있다;
 1. 다른 곳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회복지 조 급여가 지급되어야 했었을 상황
 2. 필요의 충당을 위해 극히 적은 자금만 필요한 경우
 3. 부분 입원식 또는 입원식 급여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생계비 지출이 절약되는 경우. 그 밖에도 시설 내 요양이 장기간 동안 필요할 것으로 예정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로 부양하지 않는 동안 적절한 규모로 자금조달이 요구되어야 한다.
- (2) 입원식 시설에서 입원식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규정액의 1/8과 함께 종사직에서의 수입 중 이러한 1/8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25%에 달하는 자금의 조달이 급여 수급권자가 보수를 받는 종사직으로 얻는 수입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제82조(3)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9조 한꺼번에 여러 필요 시 수입의 사용(투입)

- (1) 개 경우에 있어 특정한 필요의 충당을 위해 수입 중 일부의 사용이 요구되면, 수입의 이러한 일부는 동시에 존재하는 기타 다른 필요를 위해 수입의 사용이 얼마만큼 요구될 수 있는지를 심사 시 고려될 수 없다.
- (2) (1)의 경우에 필요 건들에 대해 여러 사회부조 기관이 관할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발생한 필요의 급여에 대한 결정이 우선한다. 필요 건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라면 수입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이 필요 건들에 있어 동일한 양씩 고려된다.

제3절 자산(재산)

제90조 사용(투입)될 수 있는 자산

- (1)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사용되어야 한다.
- (2) 사회부조는 다음의 사용이나 처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
 1. 생활기반의 구축이나 보장 또는 가정의 창설을 위해 공급에서 제공된 자산
 2. 소득세법 제10a조나 제11절 상의 추가 노후대책에 도움이 되고 그 축적이 국가적으로 장려되는 자본 및 그 수익
 3. 그 외 자산 중 8번에서 의미하는 택지의 조속한 마련 또는 유지를 위해 정해졌다고 증명된 자산- 해당 주거 목적이 장애인(제53조(1)의 첫째 문장과 제72조)이나 요양이 필요한 자(제61조)를 돕고 자산의 투입이나 사용을 통해 이러한 목적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한
 4. 적절한 가재도구: 이때 부조를 청원하는 자의 기존의 생활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5. 직업교육이나 생계활동의 시작 또는 계속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
 6. 매각된다면 부조를 청원하는 자나 그 가족에게 특수한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가보나 상속물
 7. 정신적 특히 학문적 또는 예술적 욕구 충족을 돕고 그 소유가 사치로 간주되지 않는 물건
 8. 부조를 청원하는 자나 제19조(1)내지 (3)에 언급된 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전부

또는 일부 거주하고 이들의 사망 후 그 가족들이 거주해야 하는 적절한 택지. 적절성은 거주자주, 주거필요성(예를 들면 장애인, 맹인, 요양필요자), 토지크기, 주택크기, 주거건물의 구조와 실내설비 및 주거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가치(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9. 소액의 현금 또는 그 외 금전적 가치 : 이때 신청자의 특수한 곤궁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 (3) 나아가 자산의 투입이나 사용이 자산을 투입해야 하는 자와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있어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면 사회부조는 자산의 투입이나 사용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5장 내지 제9장에 따른 급여에 있어, 적절한 삶의 영위나 적절한 노후보장의 유지가 대단히 어려워 질 수 있다면, 특히 그러하다.

제91조 대부

제90조에 따라 신청자의 필요에 대해 자산이 사용되어야 하나, 자산의 즉각적 사용이나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자산을 처분(사용)해야 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면, 사회부조는 대부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상환청구가 물권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는지에 따라 급여가 제공될 수 있다.

제4절 계산의 축소

제92조 장애인인 경우의 계산

- (1) 장애로 인해 입원식 시설, 장애인 주간시설이나 의료조치 또는 의사가 처방한 조치를 위한 급여가 필요하다면, 제19조(3)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자금지급의 부담조달이 요구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한 급여가 전부 제공된다. 이들은 제공된 급여의 비용에 대해 이러한 부담금액 만큼 부담해야 한다 ; 여러 명의 의무자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9조(3)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생계비에 대해서만 자금지급이 요구 된다.

1. 취학 이전의 아동을 위한 치료교육학적 조치
 2. 적절한 학교교육 및 이를 위한 준비에 대한 부조
 3. 취학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사회생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부조
 4. 적절한 직업을 위한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또는 그 외 적절한 활동을 위한 직업교육의 부조- 이를 위해 필요한 급여가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에서 제공될 때
 5. 의학적 재활 급여(제9집의 제26조)
 6. 직업생활에 참여를 위한 급여(제9집의 제33조)
 7. 제9집의 제41조에 따라 장애인을 위해 승인된 작업소에서의 급여와 그와 대등한 기타 작업소에서의 급여(제56조)
 8. 장애인의 직업생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하고 적합한 실질적 지식과 능력 획득을 위한 부조- 이러한 부조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부분 입원식 시설에서 제공되는 한 첫 번째 문장에 언급된 급여는 존재하는 자산의 고려 없이 제공된다. 시설에서 제공되는 생계비는 1번 내지 6번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생계비에 대해 절약된 비용 만큼만 책정된다; 이는 첫째 문장에 따른 급여와 동시에 시설에서 이행된 기타 다른 급여가 중요한(우세한) 기간에는 유효하지 않다. 장애인의 수입이 기본 규정액의 2배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째 문장 7번과 8번에 따른 자금의 조달은 그 수입에서 요구될 수 없다. 관할 주의 행정기관은 가정에서의 생활필요에 대해 절약된 비용 및 점심식사 비용분담의 책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5번과 6번의 경우에 있어 일부러 또는 대단히 경솔하게 보험에 가입을 안 했거나 충분하지 않게 보험 가입한 자는 제103조와 제104조에 따른 비용의 상환 의무가 있다.
- (3)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이외의 자가 그 외 기타 규정에 따라 (2)에 언급된 급여와 동일한 목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면, 그 의무가 (2)를 통해 침해되지 않는다. 그가 그러한 급여를 제공하는 한, (2)와는 달리 제19조(3)에 언급된 자들에게 자금의 조달이 요구될 수 있다.

제5절 타인의 의무

제93조 청구권이 넘어감(양도됨)

- (1) 급여 수급권자나 제5장 내지 제9장에 따른 부조 지급 시에는, 또한 그 부모, 함께 사는 배우자나 반려자(동거인)가 급여가 제공되는 해당기간에 제1집의 제12조 상의 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곳을 상대로 한 청구권이 있다면 사회부조 기관은 다른 곳에 통지문을 통해 이러한 청구권이 그 비용만큼 자신들에게 양도되게 할 수 있다. 사회부조 기관은 또한 그들이 급여와 동시에 첫째 문장에 언급된 급여 수급권자, 그와 함께 사는 배우자나 반려자, 미혼인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제공한 생계비 부조의 비용으로 인해서도 해당 청구권이 양도되게 할 수 있다. 다른 곳으로부터 제때 급여가 제공되었다면 급여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19조(5)와 제92조(1)의 경우에 비용상환이나 비용분담이 행해졌을 수 있을 때에만 청구권이 양도될 수 있다. 청구권이 위탁되거나 저당 잡히거나 압류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2) 통지문은 급여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중단 없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청구권이 양도되게 한다.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중단으로 간주된다.
- (3) 청구권이 양도되게 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와 항고소송은 유예작용이 없다.
- (4) 제10집의 제115조와 제116조가 (1)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94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

- (1)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가 제공되는 해당기간에 민법에 따른 생계비 청구권이 있다면, 해당 청구권이 사회부조 기관에 대한 생계비 관련 정보안내 요구를 포함해서 지급된 지출의 금액까지 양도된다. 생계비 청구권이 지속적인 지불을 통해 충족되고 있는 한 청구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 부양의무자가 제19조의 인적 범위에 속하거나 수급권자와 2촌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청구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 ; 부모와 자녀를 상대로 한 제4장에 따른 급여권자의 청구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임신했거나 6세 미만인 친 자녀를 돌보는 자와 1촌 관계인 친족을 상대로 한 생계비 청구권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93조(4)가 상응해서 유효하다. 제3장에 따른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청구권 양도에 있어서 제105조(2)가 상응해서 적용된다.

- (2) 성년이고 부양 받을 권이 있는 자가 제53조에서 의미하는 장애인이거나 제61조에서 의미하는 요양 필요자인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한 이들의 청구권은 제6장과 제7장에 따른 급여로 인해서는 매달 26유로까지, 제3장에 따른 급여로 인해서는 매달 20유로까지 양도된다. 청구권이 언급된 금액만큼 양도되고 여러 부양의무자들이 동일한 분량으로 책임을 진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반증될 수 있다. 첫째 문장에 언급된 금액은 자녀수당이 변하는 시점에 맞춰 그 변화한 백분율만큼 바뀐다.
- (3) (1)과 (2)에 따른 청구권은 다음의 경우에 양도되지 않는다:
1. 부양의무자가 제3장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이거나 청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청구권의 양도가 부당한 어려움을 끼칠 수 있을 때 사회부조 기관은 제출된 증명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이들의 전제조건(자격요건)을 안다면, 첫째 문장에 따른 양도의 제한(축소)을 고려해야 한다.
- (4) 과거에 대해서는 민법의 전제조건 하 이외에는, 사회부조 기관이 급여의 제공을 부양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시점부터 해서만 양도생계비를 요구할 수 있다. 급여가 예정상 장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면, 사회부조 기관은 앞으로의 급여에 대해 지금까지의 월 지출금액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5) 사회부조 기관은 그들에게 양도된 생계비 청구권을 급여 수급권자와 합의해서 법원에서의 권리주장을 위해 급여 수급권자에게 다시 양도하고, 주장이 관철된 생계비 청구권이 양도되게 할 수 있다. 급여 수급권자가 이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이 인수되어야 한다. (1)내지 (4)에 따른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결정한다.

제95조 사회급여의 확인

상환 받을 권리가 있는 사회부조 기관은 사회급여를 확인 및 상소 할 수 있다. 이들의 책임 없이 지나간 시한의 만기는 이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 그러나 사회부조 기관이 직접 처리한다면, 처리시한에 대해 둘째 문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6절 명령권한

제96조 명령권한

- (1) 연방 정부는 연방 참의원이 동의한 법규명령을 통해 제82조에 따른 수입- 특히, 농업, 상업, 자영업에서의 소득 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2) 연방 보건복지부는 연방 참의원이 동의한 법규명령을 통해 제90조(2)의 9번에서 의미하는 현금이나 그 외 금전적 가치의 정도(액수)를 규정할 수 있다.

제12장 사회부조 기관의 관할

제1절 사안적 관할과 공간적 관할

제97조 사안적 관할

- (1) 사회부조에 대해서는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이 사안적 관할이 아닌 한, 지역의 사회부조 기관이 사안적 관할권이 있다.
- (2)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의 사안적 관할성은 주법(Landesrecht)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가능하다면 제8조 1번 내지 6번에 의미하는 급여에 대해 각각의 통일된 사안적 관할성이 주어지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3) 주법이 (2)의 첫째 문장에 따른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면,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은 다음에 대해 사안적 관할권이 있다;
 1. 제53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장애인 편입부조의 급여
 2.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요양부조의 급여
 3. 제67조 내지 제69조에 따른 특수한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부조의 급여
 4. 제72조에 따른 맹인부조의 급여
- (4) 입원식 급여에 대한 사안적 관할은 또한 다른 장애 따라 동시에 제공되는 급여 및 제74조에 따른 급여에 대한 사안적 관할도 포괄한다.
- (5) 초 지역적 기관은, 특히 널리 퍼진 질병의 경우에, 사회부조 급여의 계발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 지역적 기관은 필요한 시설을 조성 또는 후원할 수 있다.

제98조 공간적 관할

- (1) 사회부조에 대해서는 급여 수급권자가 실제로 체류하는 구역에 있는 사회부조 기관이 공간적 관할권이 있다.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의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 수급권자의 통상 체류지의 구역에 있는 사회부조 기관이 공간적 관할권이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급여가 해당 사회부조 기관의 구역 이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도 급여의 종료 시까지 지속된다.
- (2) 입원식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 수급권자가 시설 입소 시점에 통상 체류하거나 입소 전 2개월 내에 통상 체류했던 구역에 있는 사회부조 기관이 공간적 관할권이 있다. 사회부조 시작 시 급여 수급권자가 첫째 문장 상의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겼거나 거기서 또 다른 시설로 옮겼거나 급여의 시작 후에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첫번째 시설에 대해 정해졌던 통상 체류지가 결정적이다. 첫째 문장이나 둘째 문장에 따른 통상 체류 여부와 장소가 4주 이내에 확정되지 않거나 통상 체류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사될 수 없거나 급한 경우가 제시되면, (1)에 따른 관할 사회부조 기관이 급여에 대해 지체 없이 결정해서 이를 임시로 우선 제공해야 한다. 첫째 문장 상의 시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통상 체류는 엄마의 통상 체류가 대신한다.
- (3) 제74조의 경우에는 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때까지 사회부조를 지급했던 사회부조 기관이 공간적 관할권이 있고, 그와 다른 경우에는 사망지의 구역에 있는 사회부조 기관이 공간적 관할권이 있다.
- (4) 법원의 지시로 구류집행을 위해 시설에 체류하거나 체류했던 사람에 대한 부조에는 (1)과 (2) 및 제106조와 제109조가 상응해서 적용된다.
- (5) 급여를 외래의 보살핌을 받는 주거방식으로 받는 사람에 대한 급여에서는, 이러한 주거방식의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공간적 관할권이 있었던 사회부조 기관이 계속해서 공간적으로 관할한다. 본 법령집의 효력 발생 전에 정해진 관할권은 이로 인해 침해되지 않는다.

제99조 차이가 나는(서로 다른) 실행의 유보

- (1) 주들은 본 법령집에 따른 과제의 실행을 위해, 군들이 소속 읍, 면들 또는 그러한 지방자치 행정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것과 그 정도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초 지역적 기관이 사회법원법(Sozialgerichtsgesetz)에 따른 이의결정(Widerspruchsbescheid)을 내린다.

제2절 특별 규정

제100조 독일과 스위스 간의 구호협정에 근거한 관할

독일 연방공화국과 스위스 연방 간의 1952년 7월14일자 부조필요자의 구호에 관한 합의를 위한 최종의정서에서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전권위임 설명에서 언급된 독일의 구호 부서는 제24조(4)에 따른 해외에 있는 독일인을 위한 사회부조 급여에 대해 공간적 관할권이 있을 수 있는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이다.

제101조 관청규정과 도시국가 -약관

- (1) 어느 부서가 관할 관청인지는, 주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주 정부가 정한다.
 (2) 베를린 주, 브레멘 주, 함부르크 주의 시 정부는 관청의 관할권에 관한 본 법령집의 규정을 이들 주의 특수한 행정기구 구성에 맞게 조정할 권한이 있다.

제13장 비용

제1절 비용 상황

제102조 상속인을 통한 비용 상황

- (1) 급여 수급권자의 상속인이나 이들(급여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반려자(동거인)가 급여

수급권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이들의 배우자나 반려자의 상속인은 (5)를 조건으로 하여 사회부조 비용의 상환의무가 있다. 상환의무는 상속개시 이전의 10년 기간 내에 지출되었고 제85조(1)에 따른 기본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사회부조 비용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배우자나 반려자의 상속인의 상환의무는 배우자나 반려자와 별거하는 동안 지급되었던 사회부조 비용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급여 수급권자가 그의 배우자나 반려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첫째 문장에 따른 비용상환의무가 없다.

- (2) 상속인의 상환의무는 유산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존재하는 유산의 가치로 배상책임을 진다.
- (3) 비용상환 청구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 1. 유산의 가치가 제85조(1)에 따른 기본금액의 3배보다 적은 경우
 - 2. 상속인이 급여 수급권자의 배우자 또는 반려자이거나 친족이고 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때까지 상시로 급여 수급권자와 가정공동체에 거주하고 급여 수급권자를 돌보았다면, 유산의 가치가 15,340유로보다 적은 경우
 - 3. 개 경우의 특수성에 따라 상속인에게 청구가 특수한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경우
- (4) 비용상환 청구는 급여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나 반려자의 사망 후 3년이 되면 소멸한다. 제103조(3)의 둘째 문장이 상응해서 유효하다.
- (5) 상속인에 의한 비용상환은 제4장에 따른 급여와 1987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결핵 부조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3조 잘못이 있는 행동의 경우에 비용 상환

- (1) 만 18세 이상이고 고의로 또는 대단히 경솔한 행동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사회부조 급여 자격요건을 가지도록 초래한 자는 사회부조 비용상환 의무가 있다. 또한, 급여 수급권자로서나 그 대리인으로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행정행위의 불법성(위법성)을 알았거나 대단히 경솔해서 알지 못했던 자도 비용상환 의무가 있다. 비용상환이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한 비용상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 (2) (1)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상환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양도된다. 제102조(2)의 둘째 문

장이 적용된다.

- (3) 비용상환 청구는 급여가 제공된 해의 만료로부터 3년이 되면 소멸된다. 소멸시효의 정지, 만기정지, 새로운 시작, 효력에는 민법전의 조항들이 의미에 맞추어 적용된다. 소송의 제기는 급여결정의 면제와 동등하다.
- (4) 제10집의 제44조 내지 제50조는 침해되지 않는다. (1)에 따른 비용상환 및 제10집의 제50조에 따른 그와 같은 비용의 상황에 대한 의무자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제104조 부당하게 제공된 급여에 대한 비용 상황

부당하게 제공된 급여에 대한 비용의 상황은 제103조의 상응하는 적용 하에 고의로 또는 대단히 경솔한 행동으로 급여를 초래했던 자에게 의무가 있다. 첫째 문장에 따른 비용상환 및 제10집의 제50조에 따른 그와 같은 비용의 상황에 대한 의무자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제105조 이중 급여 시 비용 상황, 상황 필요 없는 주거비용

- (1) 우선적으로 의무가 있는 급여 기관이 사회부조 기관의 급여사실을 모르고 급여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제공했다면, 급여 수급권자는 받은 분량을 사회부조 기관에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
- (2) 제27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시 고려되는 주거비용(난방비와 온수비용은 제외)의 56%는 반환 요구되지 않는다. 첫째 문장은 제10집 제45조(2)의 셋째 문장의 경우에서나 생계비부조와 동시에 주택 수당법에 따른 주택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사회부조 기관 간의 비용 상환

제106조 시설 내에 체류 시 비용 상환

- (1) 제98조(2)의 첫째 문장에 따른 관할 사회부조 기관은 제98조(2)의 셋째 문장에 따라 임시로 급여를 제공한 기관에 지출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제98조(2)의 셋째 문장과 넷째 문장의 경우에서 통상 체류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사될 수 없고, 급여제공에 대해 지역의 사회부조 기관이 사안적 관할권을 가졌다면, 이러한 해당 지역의 기관이 속한 구역의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사회부조기관에 지출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 (2) 시설 밖에서 숙식하나 시설 내에서 보살핌을 받거나 시설 밖에서 휴가 중인 경우에도 입원식 시설에서의 체류로 간주된다.
- (3) 제98조(2)의 경우에서 급여 수급권자가 시설을 떠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시설이 있는 지역의 기관의 구역에서 사회부조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 수급권자의 제98조(2)의 첫째 문장 상의 통상체류지가 있는 구역의 사회부조 기관에서 앞에 언급된 지역의 사회부조 기관에 지불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2)의 둘째 문장이 상응해서 적용된다. 이러한 해당 구역이나 제98조(2)의 첫째 문장 상의 시설에서의 밖에서 체류가 2개월을 넘지 않으면, 이러한 체류로 인해 상환의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2개월의 연속된 기간에 급여가 제공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시설을 떠난 후 늦어도 2년이 경과되면 상환의무가 종료된다.

제107조 다른 가정에서 숙식 시 비용 상환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양친이나 편부모 집이 아닌 다른 사람 집이나 다른 가정에서 숙식했다면, 제98조(2)와 제106조가 상응해서 유효하다.

제108조 해외에서 귀국 시 비용 상환

- (1) 외국에도 국내에도 통상 체류지가 없는 자가 외국에서 귀국해서 한달 이내에 사회부조 급여가 투입되었다면 중재부서에서 지정한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이 지출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중재부서는 결정 시에 이전 회계연도에 사회부조 기관에 있어 본조항 및 제24조와 제115조에 따라 발생한 부담과 주민 수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급여 투입 시 배우자, 반려자(동거인), 친족, 사돈으로 함께 거주한 자들에게는 첫째 문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투입 시 배우자, 반려자(동거인), 친족, 사돈이 함께 산다면 공동의 상환 의무인 사회부조 기관이 지정된다.
- (2) (1)에서 뜻하는 중재부서는 연방 행정국 (Bundesverwaltungsamt)이다. 주들은 행정합의를 통해 다른 중재부서를 정할 수 있다.
- (3) 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출된 비용의 상환 의무가 있는, (1)에 따른 사회부조 기관은 급여 수급권자의 배우자, 반려자(동거인) 또는 미성년 자녀들이 추후에 귀국하고 1개월 이내에 사회부조가 투입된다면, 이들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도 상환해야 한다.
- (4) 3개월의 연속된 기간에 사회부조 급여가 지급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출된 비용의 상환 의무가 누락된다.
- (5) 국내 귀국 후 연방법 또는 연방과 주들 간의 합의를 통해 규정된 숙식을 하는 자들에게는 (1)내지 (4)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09조 통상 체류에서 제외

제98조(2)에서 의미하는 시설에서의 체류나 법원이 지시한 구류에 근거한 형무소에서의 체류는 제12장과 제13장, 제2절에서 의미하는 통상 체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10조 비용 상환의 규모

- (1) 지출된 비용은 급여가 본 법령집에 상응하는 한, 상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급여 수급권자의 체류지에서 급여제공 시점에 존재하는 사회부조 급여에 대한 기본 원칙

이 유효하다.

- (2) 12개월 이하의 급여 제공기간에 지급된 2560유로 미만의 비용은 제98조(2)의 셋째 문장에 따른 임시적 급여제공의 예들을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다. 제19조(1)의 둘째 문장에서 의미하는 세대구성원들에 대한 비용이 상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2560유로 상의 한도가 첫째 문장과 달리 세대 구성원들에 대해 공동으로 적용된다.

제111조 소멸 시효

- (1) 지출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 후부터 4년으로 시효가 소멸된다.
- (2) 소멸시효의 정지, 만기정지, 새로운 시작, 효력에는 민법전의 조항들이 의미에 맞추어 적용된다.

제112조 연방 주 차원에서의 비용 상환

주들은 그들 구역의 사회부조 기관들 간의 비용 상환에 대해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제3절 그 외 규정

제113조 상환청구권의 상위(우선)

사회부조 기관의 제10집의 제104조에 따른 타 급여기관을 상대로 한 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의 양도, 압류, 저당(담보)- 이러한 것들이 상환 청구권의 발생 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보다 우선한다.

제114조 그 외 규정에 따른 사회부조 기관의 상환 청구권

사회부조 기관의 그들의 지출비용을 급여 수급권자의 청구권 상대인 다른 기관에게 요구할 권리가 제93조보다 우선하는 그 외의 기타 법적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면, 다른 기관

을 상대로 청구권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비용 외에 또한 이러한 급여와 동시에 함께 사는 배우자나 반려자, 미성년이고 미혼인 자녀에게 급여 제공된 생계비부조 비용도 지출로 간주된다.

제115조 해외에서 귀국 시 비용 상황에 대한 과도기 규정

연방 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의 제108조의 1994년 1월1일 이전에 유효한 판에 따라 발생했거나 중재부서에서 규정했던 비용상황에 대한 사회부조 기관의 의무는 존속된다.

제14장 절차규정

제116조 사회적 경험이 있는 제3자의 관여

- (1) 주법(Landesrecht)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 행정규정의 공포 전에 사회적 경험이 있는 제3자들- 특히 필요자들을 돌보는 협회나 사회부조 급여 수급자 협회로부터 이 청문된다.
- (2) 주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사회부조의 각하나 사회부조 종류 및 규모의 확정 에 대한 이의에 관해 행정행위의 공포 전에, (1)에 설명된 자들과 같은 제3자가 자문격으로 관여한다.

제117조 정보제공 의무

- (1) 부양의무자, 그와 함께 사는 배우자나 반려자(동거인)와 비용상환의무자는 본 법령집의 시행이 요구한다면, 사회부조 기관에 그들의 수입과 자산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이들은 사회부조 기관의 요구에 따라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반론의 여지없이 가정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생계비 급여를 제공한다고 추측되는 자들에 대해서도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제10집의 제21조(4)에 따른 재무관청의 정보제공 의무는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로 범위가 확장된다.

- (2) 본 법령집에 따른 급여를 신청했거나 받고 있는 자에게, 제외나 감소가 적절하거나 적절했던 급여를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자는 개 경우에 있어 본 법령집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부조 기관에 요청에 따라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3) 본 법령집에 따른 급여를 신청했거나 받고 있는 자에게, 제외나 감소가 적절하거나 적절했던 급여에 대한 의무가 있거나 있었거나 그에게 꾸어 준 돈이 있거나 재산 물품을 보관하는 자는, 개 경우에 있어 본 법령집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부조 기관에 요청에 따라 이에 관한 정보 및 그와 연관된 수입이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4) 본 법령집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고용주는 본인에게 고용된 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그와 함께 사는 배우자나 반려자(동거인), 비용상환 의무자의 고용종류, 고용기간, 근무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사회부조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5) (1)내지 (4)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자는 본인이나 그 가까운 자들(민사소송규정(Zivilprozessordnung) 제383조(1)의 1번 내지 3번)로 하여금 범죄 행위나 불법으로 인해 추적될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6) 고의로나 경솔하게 (2), (3)의 첫째 문장, (4)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바르지 않게 제공하거나 완전하지 않게 제공하거나 제때에 제공하지 않는 자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제118조 심사, 행정 협조

- (1) 사회부조 기관은 제4장을 제외한 본 법령집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들을 자동화된 데이터 조정을 통해 또한 정기적으로 다음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 :
 1. 이들에게 연방 노동 중개소 또는 공적 재해보험 기관이나 연금보험 기관(정보부서)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와 급여규모와 기간
 2. 본 법령집에 따른 급여지급 기간과 보험가입의무 기간이나 소액종사 기간이 중첩되는지 여부와 그 규모
 3. 소득세법 제45d조(1)에 따른 데이터가 연방 재무국(정보부서)에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데이터 내역

4. 제90조(2)의 2번에 따른 자본이 소득세법의 제10a조나 제11절에 의미하는 장려된 추가 노후대책의 목적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지 여부와 그 규모 사회부조 기관들은 첫째 문장에 따른 심사를 위해, 본 법령집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성별, 주소, 보험번호를 정보부서(Auskunftsstelle)에 전달할 수 있다. 정보부서들은 둘째 문장에 따라 전달된 데이터들을 맞추어 조정하고 첫째 문장 상의 확인에 관한 데이터를 사회부조 기관에 전달한다. 사회부조 기관에 전달된 데이터와 데이터 입력물은 조정 실행 후 즉시 반납되거나 삭제 또는 제거되어진다. 사회부조 기관들은 본인들에게 전달된 데이터들을 첫째 문장에 따른 심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심사 결과가 확인과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의 전달된 데이터는 즉시 삭제된다. (2)사회부조 기관들은 본 법령집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자동화 된 데이터 조정을 통해, 이들이 본 법령집에 따른 급여를 사회부조의 다른 기관을 통해 지급 받거나 받았는지 여부와 그 급여규모와 기간에 대해 또한 정기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 (1)의 둘째 문장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들이 사회부조의 다른 기관으로나 제120조 1번에 의미하는 중앙 중개부서로 전달될 수 있다. 이들은 전달된 데이터들을 맞추어 조정하고, 전달한 사회부조 기관에게 첫째 문장 상의 확인을 반송한다. 첫째 문장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이들에게 전달된 데이터나 데이터 입력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이러한 것들은 즉시 반납되거나 삭제 또는 제거되어진다. 본 항에 따른 심사과정이 통합되어서 (1)에 따른 심사과정과 결합될 수 있다.
- (3) 연금보험 기관의 자료부서는 연방 전 지역에 대한 중개부서로서 (1)과 (2)에 따라 전달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이것이 (1)과 (2)에 따른 데이터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 해당 자료부서는 상용데이터 셋트(제6집의 제150조)의 데이터와 고용주에서의 심사를 위해 부서에서 취급된 데이터(제4집의 제28p조(8)의 둘째 문장)의 데이터들이 데이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문장에 따라 연금보험기관의 자료부서에 저장된 자료(데이터)들은 데이터 조정의 종료 후 즉시 삭제된다.
- (4) 사회부조 기관은 사회부조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다른 행정부서, 경제기업체, 행정구역, 행정기관에 있는 본 법령집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의 데이터가 이러한 과제의 완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데이터들을 심사할 권한이 있다. 이들은 (1)의 둘째 문장에 언급된 데이터들을 심사를 위해 전달할 수 있다. 심사는 또한 권한 상 넷째 문장에 언급된 각 데이터들이 제출되어 있는 부서와 함께, 자동화 된 데이터 조정방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첫째 문장에 따라 다음의 데이터들의 심사가 허용 된다 :

1. 생년월일과 출생지
2. 혼인관계
3. 주거지
4. 주거공간의 임대나 양도관계의 기간과 비용
5. 전기, 가스, 수도, 난방, 쓰레기처리 관련비용과 기간
6. 차량보유자 자격

첫째 문장에 언급된 부서는 넷째 문장에 언급된 데이터들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심사와 관련해서 자신들에게 전달된 데이터들을 보고 제출 후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해당 부서를 통한 전달이 특수한 법적 사용규정에 위배 된다면, 그 전달은 행해지지 않는다.

제119조 연방의 위임으로 학문적 연구

사회부조 기관은 연방 보건복지부의 위임으로, 사회급여에 관한 법률의 목표 달성을 검증, 개선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연구계획을 이행하는 학문기관에 다음의 경우에 사회자료를 전달할 수 있다 :

1. 이것이 연구계획- 특히 익명처리 또는 가명 처리된 데이터로는 이행될 수 없는 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연구계획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전달불가에 대한 당사자의 보호가치가 있는 관심을 유효히 능가하는 경우

전달 전에 당사자는 의도된(계획된) 전달, 연구계획의 목적 및 셋째 문장에 따른 이익제기

권리에 관해 서면으로 안내 받는다. 당사자는 이러한 안내 후 1개월 이내에 전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제10장의 제2장이 침해되지 않는다.

제120조 명령권한

연방 보건복지부는 연방 경제노동부와 합의해서 연방 참의원이 동의한 법규명령을 통해

1. 제118조(1)에 따른 자동화 된 데이터 조정의 절차와 그 절차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때, 그 관할 구역이 최소한 한 연방 주의 전 지역을 포괄하는 중앙 중개부서(수뇌부서)를 통해 안내부서로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된다 .
2. 제118조(2)에 따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

제15장 통계

제121조 연방통계

본 법령집의 효과 판정과 그 계발을 위해

1. a) 생계비부조(제27조 내지 제40조)
 - b)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제41조 내지 제46조)
 - c) 의료부조(제47조 내지 제52조)
 - d) 장애인 편입부조(제53조 내지 제60조)
 - e) 요양(수발)부조(제61조 내지 제66조)
 - f) 특수한 사회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부조(제67조 내지 제69조)
 - g) 기타 다른 생활상태에서의 부조(제70조 내지 제74조)의 수급자
2. 사회부조의 지출과 수입에 관한 조사가 연방통계로 행해진다.

제122조 조사 항목

(1) 제121조 1번에 따른 조사 시 조사항목은

1. 최소한 1개월 동안 생계비부조를 받는 급여 수급자에 있어서는

- a) 성별, 태어난 해와 달, 국적, 이민배경, 외국인인 경우에는 또한 체류 법 상 상태, 세대주와의 관계, 지급된 추가수요 가산금의 종류
 - b) 15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인 급여 수급자는 a에 언급된 항목에 추가해서 : 고용관계, 급여의 축소(제한)
 - c) 18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인 급여 수급자는 a, b에 언급된 항목에 추가해서, 노동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제6집의 제43조(2)에서 의미하는 전적인 생계능력 감소- 전적인 생계능력 감소가 제거될 가능성이 없을 때
 - d) 공동의 필요가 산정되는 인적 공동체에 있는 급여 수급자들과 개별 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우: 주거지역, 재단종류, 시설 내부 및 외부 급여, 급여 개시한 해와 달, 인적 공동체의 최소한 1인 구성원에 대한 연속적 급여 제공이 개시된 해와 달, 매월 청구와 총 필요, 인정된 월 총 집세(부대비용을 뺀), 계산되거나 청구된 수입과 양도된 청구권의 종류와 해당 금액, 세대구성원의 수, 세대 내 급여 수급자의 수
 - e) 인적 공동체의 구성 변화와 급여 제공의 종료 시에는 a내지 d에 언급된 항목에 추가해서, 구성 변화나 급여 종료 한 해와 달, 급여의 종료 시에는 또한 급여 종결 사유
2. 1번의 인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급여 수급자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대, 국적, 고유의 주거공간 존재여부, 재단의 종류
- (2) 제121조 1번 b에 따른 조사 시 조사항목은: 성별, 태어난 해와 달, 주거지역(시, 구, 군, 읍, 면), 재단의 종류, 국적, 제41조(1)의 2번에 따른 전적인 생계능력 감소, 시설 내부 및 외부 급여, 급여 지급의 사유와 개시한 해와 달, 제42조 첫째 문장 1번 내지 5번에 언급된 매월 필요, 월별 순수요, 계산된 수입의 종류
- (3) 제121조 1번 c내지 g에 따른 조사 시 조사항목은 모든 급여 수급자에 있어: 성별, 태어난 해와 달, 주거지역, 국적, 외국인인 경우에는 또한 체류법 상 상태, 보고연도 중에 그리고 말에 제공된 급여 및 시설 내부와 외부의 급여(제8조의 급여 종류에 따른), 시설 내부와 외부에서 연말에 지급된 생계비 부조, 요양부조와 장애인 편입부조의 경우에는 또한 각 급여의 종류와 건당 지출, 급여 제공이 개시되고 종료한 해와 달 및 종결종류: 개인별 예산을 통한 급여, 장애인 편입부조의 경우에는 추가로 일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성공한 종사자, 요양부조 시에는 추가로 사회보험 기관

의 요양급여 제공, 18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인 시설 내 제5장 내지 제9장에 따른 부조수급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또한 제4장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면 (1)의 1번 c에 언급된 항목.

- (4) 제121조 2번에 따른 조사 시 조사항목: 재단의 종류, 시설 내부와 외부에서의 제8조에 따른 급여의 지출, 시설 내부와 외부에서의 수입 종류와 제8조에 따른 급여 별 수입, 제4장에 따른 급여의 경우에는 추가로 제45조 둘째 문장에 따른 감정의 깃수와 비용

제123조 보조 항목

(1) 보조항목은

1. 정보제공 의무자의 이름과 주소
 2. 제122조(1)의 1번과 (2)에 따른 조사에 있어서는 급여 수급자의 표지번호 (Kennnummer)
 3. 경우에 따른 재조회가 가능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 (2) (1)의 1번에 따른 표지번호는 통계의 정확성 검사와 매번 지난 현황조사의 보충기록에 유용하다. 표지번호는 수급권자의 인적인 그리고 사안적인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점에, 늦어도 돌아오는 항목조사의 종결 후 삭제된다.

제124조 주기성, 보고 시기

- (1) 제122조 (1)의 1번 a내지 d와 (2)에 따른 조사는 현황조사로서 매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된다. 그 밖에도 급여 제공의 개시와 종결 시 그리고 제122조(1)의 1번 d에 따른 인적 공동체의 구성변화 시에도 보고되어야 한다. 제122조(1)의 1번 e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급여 제공 종결 및 인적 공동체의 구성 변화 시점에 보고되어야 한다.
- (2) 제122조(1)의 2번에 따른 조사는 현황조사로 매 4분기마다 사분기 말에 시행된다.
- (3) 제122조(3)과 (4)에 따른 조사는 매년 전년도에 대해 이루어진다.

제125조 정보제공 의무

- (1) 조사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제123조 (1)의 3번에 따른 보고 및 제122조 (1)의 1번 d와 제122조 (3)에 따른 거주지역 보고는 임의이다.
- (2) 관할지역의 사회부조 기관과 초 지역적 사회부조 기관 및 지방관청에 속하는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이들이 본 법령집의 과제를 수행한다면,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제126조 전달, 공고

- (1) 계획의 목적 및 입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용을 위해서- 그러나 개 경우의 규정에 대해서는 아닌 연방 통계청과 각 주에 있는 통계청에 의해 전문적 관할 최고 연방 관청기관이나 주 관청에 통계자료가 담긴 도표- 도표면이 한 경우만 입증한다 해도 가 전달될 수 있다. 도표면이 한 경우만 입증하는 도표들이 행정구역 차원에서 세 분되지 않고 마련되었을 때에만 전달될 수 있다.
- (2) 주에 있는 통계청은 급여 수급자의 25%를 선발 데이터셋트로 한 무작위 추출조사의 개별 사항 보고를 매년 현황조사와 보고연도 중간의 조사가 마련된 직후 연방 통계청에 연방의 추가준비를 위해 제공한다.
- (3) 사회부조 통계결과는 각 지방(시, 읍, 면) 별로 공고될 수 있다.

제127조 지방자치 단체에 전달

- (1) 통계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 관할 구역에 대해 보조항목을 제외한 제122조에 따른 조 사로부터의 개별 사항 보고가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연합의 통계 관할 부서에 전달될 수 있다- 단, 연방통계법의 제16조 (5)에 따른 전제조건이 주어지는 한
- (2) 해당 사회부조 기관들이 동의하고 보고부서의 데이터 조사가 표준화 된 조사 및 보 고 규정과 통일된 평가정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데이터들이 또한 지방자치 단체 내 비교목적을 위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

제128조 추가 조사

제121조 1번에 따른 조사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제3장 내지 제9장의 조치와 급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연방통계로서 추가 조사가 행해질 수 있다.

제129조 명령권한

연방 보건복지부는 연방 내무부와 협의하고 연방 참의원이 동의한 법규명령을 통해 다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 a) 제125조(2)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자의 범위
- b) 제5장 내지 제9장에 따른 급여나 사회부조 및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 수급자의 그룹
- c) 사회부조 및 노령과 생계능력 감소 시 기초보장이나 제5장 내지 제9장에 따른 급여의 정해진 급여 별 수급자
- d) 조사 시점
- e) 제122조와 제123조 상의 필요한 조사 항목과 보조 항목
- f) 조사 방식(전체 조사 또는 임의추출 조사)

제16장 과도기 규정 및 최종 규정

제130조 외래 요양(수발)을 받는 자에 대한 과도기 규정

장애인 편입부조나 요양부조 급여를 받고 1996년 6월 26일에 본인에게 고용된 자나 외래(방문)서비스를 통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는 자에게는 연방사회부조법 제3a조(1996년 6월 26일에 유효한 개정판에서)가 유효하다.

제131조 특수 프로그램인 마인쯔 모델로 인한 과도기 규정

수입으로 고려될 수 없는 제83조(1)에서의 급여에는 또한 특수 프로그램인 '마인쯔 모델

“의 시행을 위해 연방 경제노동부에서 공포한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회보험 보험료의 보조금 및 자녀수당 보조금도 포함된다.

제132조 해외에 있는 독일인에 대한 사회부조 지급을 위한 과도기 규정

- (1) 2003년 12월 31일에 연방 사회부조법의 제147b조(2003년 12월 31일에 유효한 개정판에서)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았던 독일인은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를 계속해서 받는다.
- (2) 1. 2004년 1월1일 이전의 24개월 동안에 중단 없이 연방 사회부조법의 제119조(2003년 12월 31일에 유효한 개정판에서)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았고
 2. 체류국가에서 지속적 체류허가가 있는 독일인은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를 계속해서 받는다. 2003년 12월31일에 연방사회 부조법 제119조(2003년 12월31일에 유효한 개정판에서)에 따른 급여를 제공 받았고 첫째 문장에 따른 전제조건과 제24조(1)의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은 독일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가 2004년 3월31일이 지남으로 종결된다.
- (3) 연방 손해 배상법 제1조(1)의 전제조건을 갖추고
 1. 1933년 1월30일과 1945년 5월 8일 사이에 그들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특수한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 제국의 영역이나 자유도시 단찌히를 떠났거나 같은 이유로 해서 돌아올 수 없었던 또는
 2. 1945년 5월8일 이후에 그리고 1950년 1월1일 이전에 1937년 12월31일의 상태에 따른 독일 제국의 영역이나 자유도시 단찌히를 떠났던 독일인이 체류국가에서 지속적 체류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1)과 (2) 또는 제24조(1)에 따른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는다 해도 특이한 곤궁상황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제24조(2)가 유효하다.

제133조 기본법 제116조(1)항에 따른 독일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부조에 대한 과도기 규정

- (1) 본 법령의 적용범위 이외의. 그러나 기본법 제116조(1)에 언급된 지역 내에서 출생하고 그곳에 통상 체류하는 독일인은 제24조(1)의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는다 해도 특

이한 곤궁상황에서 특별 부조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2)가 유효하다. 이러한 급여의 정도는 체류국가 내에서 대등한 생활상태에서의 해당 급여에 따라 책정된다. 특별 부조는 연방에 의한 비용 인수 하에 국내에 소재를 둔 비영리 사회복지 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 (2) 연방 정부는 연방 참의원이 동의한 법규명령을 통해 개인에 대한 지급 전제조건, 급여의 책정 및 법인체와 절차를 규정할 권한이 있다.

제133a조 시설에 있는 부조 수급자에 대한 과도기 규정

2004년 12월 31일에 연방 사회부조법의 제21조(3)의 넷째 문장에 따른 추가현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급여가 2004년 12월에 대해 정해진 액수로 계속해서 제공된다.

제134조 제2집의 효력 발생으로 인한 과도기 규정

생계능력이 있는 제2집 상의 부조 필요자로 연방 사회 부조법(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개정판에서)의

1. 제18조 (4)와 (5)나
2. 제19조(1)과 (2) 또는
3. 제20조에 따른 급여나 조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받은 자에게는 언급된 조항들이 인가가 끝날 때까지, 그러나 길어야 2005년 12월31일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제135조 제2차 법률 정화법으로 인한 과도기 규정

- (1) 제2차 법률 정화법으로 인해 효력 상실한 조항에 따라 결핵환자나 결핵 위험이 있는 자 또는 결핵 회복기 환자가 1986년 12월31일에 현행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급여는 지금까지 근거가 된 조항에 따라 계속해서, 그러나 길어야 1987년 12월31일까지, 지급된다. 주법에 따라 사회부조의 공간적 기관이 사안적으로 관할하지 않는다

면 사회부조의 초 지역적 기관이 사안적으로 관할한다.

- (2) 주들은 기존의 결핵부조의 범주 내에서 지급된 대부의 관리를 위해 다른 관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6조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의 전제

통일조약의 제3조와 관련된 별지1의 제10장 H영역 제3절의 3번 d와 g에 따른 전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통일조약의 제3조와 관련된 별지1의 제10장 H영역 제3절의 3번에 따른 그 밖의 아직 존재하는 전제는 베를린 주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강영실 외, 『독일사회복지론』, 엠에드, 2005.
- 김태성·류진석·안상훈, 『현대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출판, 2005.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 2001.
- 변용찬 외,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정책포럼』, 제167호, 2003.5.
- 이상은, 「빈곤제도의 국제비교」, 『사회복지연구』, 제24호, 2004년 봄, pp.125~148.
- 이현주 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정재훈, 「독일의 빈곤정책」, 『외국의 빈곤정책동향 및 비교분석』,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4.
- 최봉석, 『독일의 노인복지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년 주요 국별 경제전망』, 2004. 12. p.119.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 Adema, W., D. Gray & S. Kahl, "Social Assistance in Germany",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58, OECD, 2003.
- Becker, I & Hauser, R., *Verteilung der Einkommen 1999-2003*, Frankfurt/M, 2004.
- Bundesagentur für Arbeit(BA),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Arbeitslosengeld II/Sozialgeld)*, Bundesagentur für Arbeit , 2004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BMGS), *Lebenslagen in Deutschland - Der 2.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

- Berlin: BMGS, 2005.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BMGS),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Nürnberg: Bildung und Wissen(BW), 2005.
-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BMVBW), *Wohngeld 2005*, Berlin:BMVBW August 2005.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Kindergeld 2005*, Berlin:BMFSFJ, 2005.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Erziehungsgeld, Elternzeit*, Berlin:BMFSFJ, 2005.
- DGB, *Viertes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Hartz IV)*, Berlin: Deutscher Gewerkschaftsbund(DGB), 2004.
- EU, *Strategies to Enhance Social Integration -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3-2005*, OECD, 2004.
- Guy Palmer, et al., *Monitor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4*,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4. (www.poverty.org.uk website).
- OECD, *OECD Social Indicators*, OECD, 2005. (<http://www.oecd.org>).
- Smeeding, T., "Globalization, Inequality and the Rich Countries of G-20: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Study(LIS)", *LIS Working Paper* No. 320, July 2002.
-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hilfe in Deutschland*, 2003.
- Statistisches Bundesamt(StBA), *Sozialhilfe in Deutschland: Entwicklung, Umfang, Strukturen*, Wiesbaden:StBA, 2003.
- Waltermann, R., *Sozialrecht*, Heidelberg: C.F.Müller, 2004.
- Westerheide. P., *Die Entwicklun und Verteilung des Vermoegens privater Haushalt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gn des Produktivvermoegens*, ZEW, 2004.
- Willem adema, *Social Assistance in Germany*, OECD, 2003.

○ 김 안 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Working Paper 2005-04

독 일 사 회 보 장 제 도

발행일	2005년 12월 일	값 5,000원
저 자	김 안 나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예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ISBN 89-8187-367-4 93330